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조진경  
김진  
김현아  
박혜란





---

#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

조진경 (책임 연구원)

2017. 10.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2017. 10.

연구책임자 : 조진경

공동연구원 : 김진  
김현아  
박혜란

**십대여성인권센터**



## 제 출 문

국회 입법조사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0월

조진경

# 차 례

## I.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2. 연구내용과 방법 .....	3
가. 연구내용 .....	3
나. 연구방법 .....	4
3. 선행연구 검토 .....	7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8

## II. 현재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현황 / 9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현황과 특징 .....	9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법 .....	11
3. 현행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	22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의 특징 .....	26

## III.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법제도 현황 / 33

1. 조사개요 .....	33
가. 조사 국가 .....	33
나. 관련 용어의 번역 .....	33
2. 국제조약 및 권고 .....	35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	35

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 의정서」 .....	39
다. 유엔 특별절차 제도: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 .....	45
라. 기타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	48
3. 영국 .....	51
가. 영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	52
나.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	58
다. 소결 .....	60
4. 미국 .....	61
가. 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	62
나. 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	65
다. 소결 .....	68
5. 캐나다 .....	69
가.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	70
나.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	71
다. 소결 .....	72
6. 스웨덴 .....	73
가. 스웨덴의 성매매 근절 정책: 수요 차단을 통한 성매매 폐지 .....	73
나. 스웨덴 형법 6장 .....	75
다.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정책 변화 및 현황 .....	79
라. 소결 .....	82
7.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 .....	83
가. 독일 .....	84
나. 오스트리아 .....	89

다. 네덜란드 .....	95
라. 소결 .....	98
8. 일본 .....	99
가. 일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	102
나. 일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	103
다. 소결 .....	109

#### IV.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입법과제 및 정책제언 / 112

1. 성매매에서 성착취로의 입법 및 정책 변화 .....	112
가. 국제조약 및 권고 .....	112
나. 해외 입법례 .....	112
다. 성착취로의 전환 .....	114
2.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	115
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의 필요성 .....	115
나. 피해아동·청소년으로의 통합 .....	117
다. 보호처분 조항 삭제 .....	119
3.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강력 처벌 .....	120
가. 「아동복지법」 적용을 통한 성적 아동학대 처벌 확대 .....	120
나. 어플리케이션 규제 강화 .....	122
다. 성매수 유인·권유에 대한 적극적 처벌 .....	124
라. 성착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적극적 몰수 .....	124
마.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의 확대 .....	126
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	127
4.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와 교육 .....	129
5. 아동에 특성화된 보호 시스템 마련 .....	130

가.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통합 지원 시스템 확충 .....	130
나. 아동·청소년의 체계 접근권 확보 .....	131
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근절 전담 기구 마련 .....	132
6. 범죄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 설치 .....	133

## 표 차례

[표 II-1] ‘아청법’상의 “대상아동·청소년”과 “피해아동·청소년” 비교	13
[표 III-1] 「팔레르모 의정서」 제정에 영향을 준 협약들	41
[표 III-2] 「팔레르모 의정서」 3조 가항의 인신매매 정의의 조건	43
[표 III-3] 관련 용어의 법 개정 전후 비교	54
[표 III-4] 스웨덴 형법 6장 아동 성매매 관련 내용	77
[표 III-5] 독일의 형법의 개정	85
[표 III-6] 성매매 종사자의 착취에 관한 「독일 형법」 내용	87
[표 III-7] 「독일 형법」 182조, 청소년 학대 (2013년 개정)	89
[표 III-8] 오스트리아 형법 216조, 217조 (2016): 성매매 관련 범죄 내용	91
[표 III-9] 오스트리아 미성년자 성매매 중개, 알선, 조장에 대한 처벌	92
[표 III-10] 오스트리아 미성년자 성적 학대와 성 착취에 대한 처벌 내용	93
[표 III-11] 일본 성매매 피해여성 및 여성폭력관련시설의 종류	104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미 오래 전부터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고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여전히 아동·청소년은 성매매라는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성매수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성매매 자체가 최악의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폭력, 상해 및 감금과 같은 범죄와 연결되고 있으며 심지어 성매매와 관련하여 살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매매를 통해 에이즈에 여중학생이 감염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 전체가 충격을 넘어서 공포에 휩싸여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새로운 현상으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저연령화가 두드러지고, 현대 사회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의 초기 연령은 더욱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현재 스마트폰의 채팅 앱은 성매매 알선의 주요한 형태로 대두되어 성매매 시장을 무한 확장시키고 연령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면서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려는 성매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법·제도적인 대응이나 지원 정책은 미약한 상태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사기관 단속 시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은 보호처분 역시

처벌의 개념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매수자 또는 알선자가 이를 협박, 이용하여 신고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오히려 성매수자 또는 알선자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의료적·정신적·경제적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함에도 아동·청소년이 법적 보호를 기피하게 만들어 지원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게다가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마련되어 있지만, 법적, 의료적, 자립자활을 직접 지원할 전문상담소가 부재할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 내에서 위기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소년 성보호, 성매매방지 등으로 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보면, 1996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상업적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세계회의에서 사용된 이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업적인 아동의 성착취’(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SEC)라는 용어는 이전에 사용된 ‘아동·청소년 성매매’라는 말을 대체하는 용어로, ‘성매매’라고 부를 때에는 대부분 문화권에서 부도덕과 연결되며, 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편견에 따르는 혐오가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라는 이름으로 바꿔 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가장 참을 수 없는 인권 침해 현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측면에서 각 해외입법례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어떻게 법과 정책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과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 현행 관련법을 살펴본 후, 아동 성매매와 관련된 국제인권기준과 외국 법제를 검토하여 우리의 현재 관련 법령 및 정책, 서비스지원시스템의 구축·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과제 및 정책제언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입법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내용과 방법

### 가. 연구내용

첫째, 국내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관련 법령 및 제도의 현황과 현행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검토한다.

둘째, 국제조약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주요 해외 입법례를 알아본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등 국제 조약 중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및 피해 아동 지원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권고 내용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제법상 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원칙을 검토한다. 그리고 주요 국가의 해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관련 법·제도 현황을 분석한다. 국내 아동·청소년 성 보호 체계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를 통해 도출한 주요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고,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향후 이용 가능한 자료로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관련법과 제도의 현황을 분석한다. 해외 국가의 선정기준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하고, 연구자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료 확보가 유리한 국가로 선정하였다.

셋째, 해외 입법례에 대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현행 아동·청소년 법제 개선 및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나. 연구방법

### (1) 문헌 분석

기존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 체계 관련 법령과 법률안 개선 관련 선행연구, 현장의 문제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아동·청소년성보호 관련법과 제도 현황 및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기존 해외사례 조사가 진행된 국내자료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고, 기존 자료에 인용된 법안과 정책제도 내용을 연구 대상 국가의 정책 관련 주요 정부 기관과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에서 제공한 최근 개정 법안과 최신 자료들과 비교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입법제도와 정책의 개정 내용과 변화과정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기존 자료의 발간이후 변경된 상황 등은 현지 전문가와의 소통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주요 내용은 직접 번역하였고 자료를 목록화 했다.

### (2) 해외자료 조사 분석

십대여성인권센터의 국제협력팀 자원활동가들<sup>1)</sup>이 국내 자료를 포함한 문헌조사에서 수집한 아동 성매매 관련 해외 법안 내용을 실제 원문과 대조하여 최신 개정내용을 확인하고 번역하여 연구에 반영하였다. 주로 영어권 국가와 유럽 의회 회원국의 법령정보 관련 웹사이트, 유니세프,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 웹사이트, 엑파트 인터네셔널(ECPAT

1) 어정선(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김민경(충신대학교 영어교육과)은 수많은 자료를 찾고, 읽고, 번역해 주었다.

International) 등 국제 NGO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주요 법률과 보호체계 관련 지침을 조사, 정리하고 번역하면서 자료를 목록화 하였으며, 국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수집한 해외 법안들은 원문과 비교하며 한번 더 체크하였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에서 발표한 권고와 미국 국무부, 유니세프, 엑팟 인터네셔널 등 주요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 및 권고를 검토하여 국제기준 및 다른 나라의 아동 성매매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집, 확인하였다. 성매매가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국가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시스템은 형법에 나타난 아동 성매매 범죄의 처벌 내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조사 국가의 법령 사이트와 각 국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사이트를 검색하여 번역하였고, 각 국가의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번역, 분석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주로 참고한 주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미국 국무부: <http://www.state.gov>

미국 의회: <http://www.congress.gov>

스웨덴 정부: <http://www.government.se>

스웨덴 스톡홀름 행정위원회: <http://www.lansstyrelsen.se/Stockholm>

영국 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egislation.gov.uk>

영국 검찰청: <http://www.cps.gov.uk>

유럽 의회: <https://ec.europa.eu>

유엔 인권이사회 <http://www.ohchr.org>

캐나다 법령정보시스템: <http://laws.justice.gc.ca>

### (3) 해외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한 현황 조사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아동·청소년 성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과 제도 외에도 이러한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판단하여, 각국의 실무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소통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업무 경험을 가진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단순한 법령의 제시 뿐 아니라 관련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사, 활용하였다. 또한,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하여 해당 국가에서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또는 보좌관과 직접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연구자들이 영국<sup>2)</sup>, 스웨덴<sup>3)</sup>에 직접 방문하여<sup>4)</sup> 이 연구 보고서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을 직접 탐방하여 면담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 내용을 더욱 풍부하고 확실하게 조사하고 연구 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십대여성인권센터를 고독·곤궁에 처한 소녀를 돕는 ‘Colabo’를 비롯하여 일본의 여러 유관 단체들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일본의 입법과 정책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직접 듣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 2) 영국은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2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인 Children’s Society 와 NSPCC를 2017. 7. 12(수)과 7. 14(금)에 방문하여 아동성매매관련 영국법의 개정과정을 포함한 깊은 논의를 관계자들과 나눌 수 있었다.
- 3) 스웨덴의 경우, 스웨덴 외무부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 2017. 7. 10(월)~1(화) 양일간, 스웨덴 성매매 금지 담당 Per-Anders Sunesson 대사와 직접 면담하였고, 성매매 담당 관련 정부 관계자 스톡홀름 행정위원회 성매매범죄 담당 코디네이터, NGO 기관들인 ECPAT Sweden, Freedthem의 관련 실무자를 외무부에서 면담할 수 있었고, 쉼터인 Talita, 청소년상담기관 The girl zone을 Sunesson 대사와 방문하였다.
- 4) 이 방문은 2017. 7. 9~6.까지 진행된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십 온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 3. 선행연구 검토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국가인권위원회(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가 있고, 성매매 경험이 있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과 성매매 유입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우선 십대여성들의 인권 침해 사례연구에서 십대여성들이 왜 성매매를 하게 되는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에 대해 논하고 있는 연구(김연주, 2011), 가출이 장기적이고 상습적이게 되면서 가출 청소년들은 왜곡된 성을 접하게 되고 성폭행을 당하거나 생존을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연구(정혜원, 2011),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청소년의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성윤숙 외, 2014) 연구 등이 있다. 강지명의 2013년 연구는 현행 성매매 정책에서 아동·청소년의 특성의 반영 유무가 정책평가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성매매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강지명, 2013)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의 증가,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그리고 죄의식의 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가출팸과 또래포주의 등장은 최근 성매매의 변화된 특성으로 나타난다.(이유진 외, 2013).

위와 같이 기존의 연구물들에서는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특징이나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매매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등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외입법례를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외국 입법례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처럼 대상아동·청소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별도로 연구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보호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알아보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외국 입법례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어떻게 입법, 사법, 행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 정책적 제도 개선을 유도하였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국의 아동·청소년 보호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인권과 젠더 평등을 고려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해외 주요국들의 각 국가의 법률과 제도를 알아본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교육인가 처벌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삭제 등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용어의 개정방안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용어의 타당성을 외국 입법례와 비교 분석한 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개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매수자의 강력 처벌 방향을 제시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한 측면으로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한 개정안을 도출한다.

또한 해외 입법례 분석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 지원관련 법과 정책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입법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II. 현재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현황

###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현황과 특징<sup>5)</sup>

####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현황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가(만 나이가 아님), ‘13세 이하’ 8.7%, ‘14~16세’ 57.3%, ‘17세 이상’ 32.0%로 응답자 중 66%가 중학생 나이인 14~16세에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매매 시작 연령은 평균 만 14.7세(15.7세)로, 이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성구매자, 성매매알선업자들이 중학생 정도의 나이 아이들을 성매매에 이용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 또한 하루 최대 성매매 횟수로는 ‘1회’ 33.0%, ‘2회’ 32.0%, ‘3회’ 13.6%, ‘4~9회’ 15명 14.6%, ‘10회 이상’ 3.9%의 분포를 보였으며, 하루 평균 성매매 횟수는 2.7회로 조사되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이라고 답변한 아동·청소년 중만 13~14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하루 성매매 횟수가 많다는 것은 조건만남의 형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알선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성매매 유형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로 다른 성매매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5) 자세한 조사 결과는 정현미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참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다. 그리고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응답자의 경우, 가출 후 성매매에 이용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가출 다음날~1주일 이내' 31.7%, '가출 당일' 23.8% 등 절반 이상(55.5%)이 가출 후 1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구매자로부터 부당한 경험을 당한 비율을 살펴보면, 약 80%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경험을 당하고 있었다. 그 중,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가 6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약속한 만큼의 돈을 주지 않았다' 53.4%, '성매매 질환(성병 등)에 감염된 경우가 있다' 47.6%, '성매매 전 제시했던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46.6%, '선불을 주지 않았다' 38.8%, '욕설이나 폭행, 협박을 하였다' 36.9%,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 28.2%, '가족,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19.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15.5%), '강간을 하였다'(14.6%),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가 있다'(7.8%), '돈을 빼앗겼다'(3.9%), '낙태를 강요하였다'(2.9%)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성매매 현실에 대해 아동·청소년들은 “상황이 좋으면 성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89.3%가 ‘그렇다’고 답변했으며,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또래친구들은 없다” 항목의 경우 90.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두려워하는 미래 상황에 대한 응답 결과를 5점 척도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가 4.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성매매 사실을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 4.06점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특징<sup>6)</sup>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대체적인 특징은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의 급증, 가출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환경 및 가출팸에서 비롯된 성매매로의 연결, 생존이 아닌 소비를 위한 성매매의 경향,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저연령화 등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사이버 상의 조건만남 같은 형태로 변화되고 다양한 유입경로에 의해 증가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응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은 현실적인 한계이다.

##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법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그리고 「아동복지법」, 「소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연혁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처음으로 특별하게 취급했던 2000년의 「청소년

6) 자세한 논의는 정현미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참조.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9년 6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로 전부 개정되었다. 전부개정 이유는 “법률명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아동도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 성교 행위 및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성범죄 피해자 및 보호자에 대한 합의 강요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함.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양벌규정을 보완하며,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전반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 후 2016년까지 16년 동안 31회의 개정을 거쳤다. 그 동안 동법의 소관부처는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바뀌었다.

## (2)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 관련 규정

### (가)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의 구별

‘아청법’은 제2조제6호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을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동조 제7호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을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개념상 구분하고 달리 다루고 있다.

따라서 규정의 내용상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의미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부과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즉 검사는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39조제1항), 피해아동·청소년과 달리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표 II-1] ‘아청법’상의 “대상아동·청소년”과 “피해아동·청소년” 비교

	대상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
정의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2조 7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 (2조 6항)
해당조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조 1항)	제2호나목부터 라목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대상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수사	<p>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p> <p>②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 소년부"라 한다)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p> <p>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p>	

	대상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
	할 수 있다. (38조)	
소년부송치	<p>① 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p> <p>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p>	
보호처분	<p>① 제39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p> <p>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p> <p>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p>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감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p>	

	대상아동·청소년	피해아동·청소년
	<p>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법원 소년부 판사는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p> <p>⑤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p>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처벌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4호).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

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제13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를(제14조) 알선영업행위 등에 대해 처벌(제15조)하고 있다.<sup>7)</sup>

(다) 13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범죄자 등록정보공개

‘아청법’ 제49조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등록정보의 공개대상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매매’ 범죄자와 관련하여서는 ‘아청법’ 제49조제1항3호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7)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 이외의 처분

‘아청법’ 제21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서는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併科)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외에 그 집행유예 기간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중 하나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폐지하고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로부터 취득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그 제정 이유이다. 그리고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은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지를 돕기 위한 지원시

설 및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의료지원·취업교육 및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여 성매매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제정이유이다.<sup>8)</sup>

### (1) '아청법'의 우선 적용

'성매매처벌법' 제5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성매매처벌법'의 적용보다 '아청법'의 적용이 우선임을 밝히고 있다.

### (2)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4호 다항에서는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제2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그리고 제2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2호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정 당시부터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성적 학대행위’는 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되었고, 그 문언도 처음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였다가, 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2014. 1.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각 변경됨으로써 현재는 성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삭제되고 ‘성희롱’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 학대행위’가 위와 같이 금지행위의 유형에 포함된 이후부터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각각 다른 호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면서 전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그 법정형을 달리하였으나, 「아동복지법」이 2014. 1. 28. 개정되면서 같은 호에서 같은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었다. 제71조(벌칙)에서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2조에서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 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제1항에서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

기 소년원 송치<sup>9)</sup>”의 보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현행 아동·청소년 지원 체계

#### 가. 청소년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제2호에서는 청소년 지원시설에 대해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지원시설에의 입소 및 의무교육의 제공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은 19세가 될 때까지 청소년 지원시설에 거주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규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구체적으로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9) 소년법 제32조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위한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sup>10)</sup>, 수사기관의 조사와 범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 제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給付)의 수령 지원,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또는 교육기관에의 취학을 지원한다.<sup>11)</sup>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8조제1항에서는“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등 또는 그 가족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 및 관계 기관은 성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상담소의 장이 의료기관에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성병감염 여부의 진찰·검사 및 감염된 성병의 치료비용, 성매매 또는 성매매와 관련한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비용,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의 치료·보호비용, 성매매로 인한 정신질환[기분장애, 불안장애(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섭식장애, 인격장애, 정신분열증, 해리성장애, 성적장애 등]의 치료비용, 성매매로 임신한 성매매 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성매매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문신 제거비용 및 피부질환 치료비용, 성매매와 관련한 치아손상 치료비용, 그 밖에 성매매피해로 인한 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에 드는 비용(초음파, 자기공명영상 및 양전자 단층촬영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9&ccfNo=2&cciNo=2&cnpClsNo=1>

11)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9&ccfNo=2&cciNo=2&cnpClsNo=1>

매매피해자등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상담소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상담소에서 성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해 모두 지원하게 하고 청소년에 특화된 청소년 상담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아청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검찰에서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과정 이수결정이 통보되거나 경찰에서 발견사실이 통보된 대상 청소년, 성매매로 수감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 관련시설에서 추천한 성매매 피해청소년 및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을 위해 전문가가 5박 6일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2017년 기준 1개의 중앙센터 및 10개의 권역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 라.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5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들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활지원센터 역시 상담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 특화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sup>12)</sup>

### 마. 소결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분산되어 존재한다. 그러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의 ‘청소년지원시설’을 제외하고 현재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특화시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한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프로젝트사업인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대상 아동·청소년의 재범방지교육으로써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 성격의 재범방지 교육으로 볼 수 있다.

12) 이 경우, 상담소와 마찬가지로 세대간의 차이와 욕구가 다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어,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특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의 특징

### 가. 성구매자 처벌 법정형의 상향<sup>13)</sup>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량은 2000년 법제정시보다 매우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서 현재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상승되었다(‘아청법’ 제10조제1항).<sup>14)</sup>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는 법제정시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현재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었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현재 7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개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특별형법의 엄벌주의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아청법’ 제11조 및 제12조). 일부규정의 엄격한 법정형에 대해서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위헌제청이 있었으나 합헌결정이 있었다.<sup>15)</sup>

13) 정현미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27-29면 참조

14) 그에 반하여 성인 성매매에 대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과료)로 경미하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

15) 헌법재판소 2011. 10. 25. 2011헌가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에서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4.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라는 내용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나. 성구매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

최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3년째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열 명 중 네 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3366명으로 2014년 3234명에서 132명(4.1%) 증가했다. 성매매 강요는 47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은 39명에서 120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5.5%가 집행유예를, 34.7%는 징역형, 17.9%는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성매수 범죄자의 집행유예 비율은 48.4%였다.<sup>16)</sup>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처벌에서의 문제점은 법정형이 아무리 높아도 실제 성매매의 단속 자체가 잘되지 않고, 단속이 되어 성인 성구매자가 법망에 걸리더라도 높은 법정형에 비하여 처벌은 솜방망이 식으로 가볍게 그치고 마는 데 있다. 낮은 수위의 처벌로 인하여 성인 성구매자들이 성매매의 단속 및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엄격한 처벌규정 자체는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아래의 판결 예를 보면 얼마나 실제 선고형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16) 정책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해보니”, (2017. 3. 2.),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29765>.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15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 2016. 참조.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28](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728)에서 다운로드 가능)

서울중앙지법 2009.2.16. 선고 2009고합12 판결 :

피고인 1은 2008. 10. 말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4세)에게 사귀자며 접근한 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모텔’ 210호실에서 공소외 1과 함께 장기 투숙하면서 ‘버디버디’라는 채팅사이트에 “안산 만남하실 분, 15녀”라는 채팅방을 개설해 놓고 이에 접속한 성명불상의 남자를 상대로 “조건합니다. 나이 15살, 키 155, 몸무게 45, 1시간 15만 원, 2시간 25만 원, 횟수 제한 없구요, 사진 없구요, 짱 귀여우니까 걱정마셈”이라며 채팅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이에 응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같은 동네에 있는 ‘매가넥스 12’ 극장 앞에서 만나게 한 뒤 위 ‘중앙모텔’로 함께 가 화대 명목으로 1시간에 15만 원, 2시간에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2008. 12. 16. 16:00경 위 ‘중앙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

위의 사안에서 실제 판결은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내리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1은 만 25세의 성인임에도 가출 청소년인 공소외 1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내기는커녕,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도 아니한 만 14세에 불과한 공소외 1로 하여금 속칭 ‘월조교제’를 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소외 1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 1의 행위로 인하여 앞으로 공소외 1이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1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서로 교제를 하고 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강제로 속칭 ‘원조교제’를 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1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한다. 전문에 피고인 1의 나쁜 죄질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없고 뉘우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낮은 양형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경우 영업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알선의 경우는 7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제15조제2항 3호), 징역 1년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판결한 것은 매우 가벼운 처벌이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아청법’(알선영업행위 등)으로 하여 처벌하면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에 그친 점에서 낮은 형량으로 문제 있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알선된 14세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피해자 개념이 아닌 공소외 1로 지칭하였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성매매처벌법’ 제2조(정의) 제1항 4호 다목을 보면,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에 ‘성매매에 알선·유인된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에서도 성매매 피해자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sup>17)</sup>

#### 다. 성매매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sup>18)</sup>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2009. 6. 9. 개정에서 신설규정을 두었다.<sup>19)</sup> 성매매를

17) 정현미 외(2016), 위의 글, 27-29면 인용.

18) 정현미 외(2016), 위의 글, 29-30면 인용.

하기 전 단계에서 유인 혹은 권유한 정도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아청법’ 제2조 제6호는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부터 제14조(제13조제1항의 죄는 제외한다)<sup>20)</sup>까지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하므로, 성매수자가 제13조제2항의 ‘권유’로 처벌될 경우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된다. 그러나 ‘권유’를 넘어서서 성매매를 하게 되면 성매수자는 제13조제1항을 범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은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자’가 된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성매수 행위를 할 자를 물색하고 있던 청소년 갑(여, 16세)과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이른 다음, 약속장소 인근에 도착하여 갑에게 전화를 걸어 ‘속바지를 벗고 오라’고 지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19)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피해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제2항 ‘아동·청소년 성매매유인권유’,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의 죄의 피해자가 될 때이다.

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판례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권유를 받으면 피해자이고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권유를 넘어서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사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사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제13조제1항 성매수자의 상대방을 굳이 '대상자'로 할 이유가 없다.

## 라. 소결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성구매자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 규정의 분리, 대상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러나 아동 '성매매'란 가능하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보상과 연계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활동은 모두 강간이나 성적 학대다. 우리가 아동 성매매를 단순히 성매매로 이해한다면 아동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따라서 해결책은 범죄적인 면에 집중되기 쉽다. 그 결과, 국가의 의무는 범죄자를 잡는 것 정도로 축소될 수 있고, 아동 피해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쪽은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일개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 국제적 수단들을 강구하는 데 있다.<sup>21)</sup>

2017. 8. 1.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한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sup>22)</sup>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나이, 육체적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우위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이 쉽게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고 해외의 입법례 역시 따르고 있으며,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이다.

21) ‘아동·성착취’에 대한 부분은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2004),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공약 이행 점검회의 참가 보고서”를 발췌, 인용하였다.

22)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인순 의원 및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법률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변경,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의 삭제, 전문적인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Ⅲ.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법제도 현황

### 1. 조사개요

#### 가. 조사 국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와 관련된 법령과 지원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가 자료의 확보가 유리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선정,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영미권 국가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해 그간 많은 연구를 진행해 온 스웨덴, ‘성매매 합법화 국가’로 알려진 유럽 국가들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 관련 정책을 마련해 왔다고 알려진 일본 등 8개 국가를 선정, 조사하였다.

#### 나. 관련 용어의 번역

##### (1) ‘아동’으로의 통일

현행 대한민국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의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지칭함에 있어 ‘아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2) ‘성매매’ 용어의 번역

국제사회, 그리고 세계 각국은 성매수 범죄에 대한 각국의 정치 사회 윤리 문화적 맥락과 입장에 따라, “성매매”를 표현할 때 비슷하면서도 상이한 용어를 사용한다. 영미권과 유럽의 입법제도는 대체로 성매매가 사회적 수준에서나 사회적 영향의 측면에서 규제 또는 근절해야 할 유해 행위이자 개인의 차원에서 상업적 성행위(commercial sex act)를 제공하는 이의 신체와 인권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착취행위로 접근했다. 대부분의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법적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서의 성매매 용어로는 ‘매춘부(prostitute)’에서 나온 ‘prostitution’을 쓰며, 미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업적 성행위’는 매매하/되는 성적 행위임을 명시하고, 성매매의 강제성과 신체구속, 고용과 억압 등 인신매매적 성격에 주목하는 입법례에서 성매매는 ‘sex trafficking’이라 되어 있었다. 성매수 행위를 범죄화하는 나라들<sup>23)</sup>과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를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 또는 ‘prostitution’에 대한 피해자로 보며, 스웨덴의 입법례를 보면 ‘거래’의 맥락에서 sex trade라 하고 성을 구매(sex purchase)하는 구매자(sex buyer)를 가해자로 정하여 성매수 행위를 규제한다. 공공장소에 자신의 몸을 내놓은 여성을 의미하는 prostitute는 종교적, 윤리적 이유에서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몸을 매매하는 행위를 죄악시켰던 사회문화적 전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성매매 피해자/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사용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sup>24)</sup>, 영미권과 유럽 각국 및 국제사회의 성매매

23) 성매수 행위를 범죄 행위로 처벌하는 입법제도를 가진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이지만,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인신매매의 성격을 띤 성매매와 아동 성매매는 성착취로 간주하여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24) 영국의 입법례 경우, 아동 성매매는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로 규정하고 ‘성매매(prostitution)’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도 한다.

관련 법제도에서 성매매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을 모두 ‘성매매’로 표현하였다. 특히 유엔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Protocol to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는 ‘(아동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나 대가를 위해 성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아동을 구하거나 알선 및 제공하는 행위’로, 성매매 행위를 성적 행위의 수행이 아닌 구매와 알선, 제공으로 본다. 25)

## 2. 국제조약 및 권고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으로, 현재까지 미국을 제외한 유엔 가입국이 모두 비준한 중요한 국제 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한국은 유엔에 가입한 해인 1991년 이 협약을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은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국은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제19조), 아동을 성

25)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e Sex Sector: The Economic and Social Bases of Prostitution in Southeast Asia, (1998) pp.171

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4조)고 규정하고 있다.

###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국내적으로 양국간 다국간으로 취해야 한다.

- 가. 아동을 불법적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성매매나 기타 불법적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다. 아동을 외설적인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2)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

한편, 「아동권리협약」의 채택 이후에도 아동에 대한 성 착취 행위가 계속되고, 피해 아동의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유엔은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를 채택하였다. 이 선택의정서는 아동권리협약의 목적의 실현과 협약의 규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아동을 경제적 착취, 교육에 방해되는 일,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협약 제32조), 성 착취와 성 학대(제34조), 약취, 유인, 거래(제35조), 그리고 아동 복지의 모든 측면에 해가 되는 모든 형태의 착취(제36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아동의 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확대하여야 함을 강조한다.<sup>26)</sup> 이 선택의정서 중 피해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조항에는 제8조

26)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전문(preamble):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목적 실현과

와 제9조가 있으며, 제8조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이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피해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훈련, 특히 법적, 심리적 훈련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제8조

1. 당사국은 모든 형사절차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 상 금지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가. 피해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의 특별한 요구, 특히 증인으로서의 아동에게 필요한 특별한 요구를 인정하기 위하여 절차를 적절하게 수정하는 것
  - 나. 피해아동에게 그 권리 및 역할과 절차의 범위, 시기, 진행상황 및 사건 처리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
  - 다. 아동의 개인적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견해, 요구 및 관심사가 국내법의 절차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취되고 고려되도록 허용하는 것
  - 라. 사법절차 전체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마.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신원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의 부적절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
  - 바. 적절한 경우 협박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증인의 안전

특히 제1조, 제11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 등 협약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을 고려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함을 또한 고려하며,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아동 거래의 규모와 증가를 엄숙히 우려하고, ... (중략)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과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 착취에 반대하는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 규정 및 관련 국제기구의 그 밖의 관련 결정 및 권고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보호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을 보장하는 것

사. 사건의 처리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상 제공 명령 또는 판결 집행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것

2. 당사국은 피해아동의 실제 연령이 불확실함을 이유로 피해아동의 연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포함한 범죄수사의 착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 아동에 대한 형사제도상 대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서 금지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적절한 훈련, 특히 법적, 심리적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5. 적절한 경우 당사국은 위 범죄의 예방 및/또는 피해자 보호, 재화에 관련된 개인 및/ 또는 단체의 안전과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이 조 내용이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이에 위배 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 성 착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 피해아동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제9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는 당사국이 피해 아동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9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행정조치,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을 채택 또는 강화, 실행 및 보급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관행에 특히 취약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이용한 정보,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언급된 범죄의 유해성과 예방조치에 대한 아동을 포함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증진한다. 당사국은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적 수준을 포함한 이러한 정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 및 피해아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3. 당사국은 완전한 사회복귀 및 신체, 심리적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적절한 지원을

위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적절한 절차에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를 선전하는 자료의 생산과 배포를 효과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 의정서」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Palermo Protocol))

(1)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채택

유엔은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인신매매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팔레르모 의정서」<sup>27)</sup>)를 채택하였다. 「UN 국제범죄조직 방지협약(United Nation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UNTOC))」에 부속된 이 의정서는 인신매매에 관한 국가 간의 규약을 정한 문서이다.<sup>28)</sup> 성매매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규정

27) 2000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159개국이 채택하여 ‘팔레르모 의정서’라고도 불린다.

28)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 제1조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의 관계”에 따르면,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UNTOC))」을 보충하고 해석하여 이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를 협약에 규정된 범죄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하고, 특정 국가에서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를 넘나드는 국제범죄이자 마약밀매나 무기거래와 같은 조직범죄로서 다룰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는 협약인 것이다.

2003년 12월 25일 발효되었다. 2017년 7월 현재, 153개의 채택 국가 중 117개 국가가 승인한 상태로, 우리나라는 2015년 비준하였다.

## (2) 인신매매로서의 성매매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의 피해와 각국 정부의 공동 대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초점을 맞춰 강제노동, 노예제도, 가정 노역 등 관습에 따른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일체의 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의정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3p 패러다임인 예방(prevention, 입법제도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피해를 예방한다), 기소(prosecution, 가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범죄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최대 형량을 정한다), 보호(protection,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한다)라는 진행원칙을 반영하였으며, 각국의 대응 방식이 이 의정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sup>29)</sup>

의정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점에서 현대 국제인권법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국제인권선언’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아동 성매매를 포함한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성매매가 특정 국가의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성격을 띠어가고 조직범죄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퇴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이러한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인신매매범들을 처벌하며, 국제적으로

29) 미 국무부 웹사이트, <https://www.state.gov/j/tip/3p/> 참고, 이 자료에 따르면 네 번째 p로 협력(partnership)을 제안하기도 한다.

인정된 인권의 보호 등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근원국, 경유국 및 목적국에서의 종합적이고 국제적 접근방법<sup>30)</sup>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아동 성착취로서의 성매매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 아동인권협약」 34조와도 부합한다.

[표 Ⅲ-1] 「팔레르모 의정서」 제정에 영향을 준 협약들

성매매 관련 협약
1921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1921과 1933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의 수정을 위한 1947 의정서
1950 인신매매와 타인의 착취와 매춘 억제를 위한 유엔 협약 (1950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197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 (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인권 관련 협약
1948 세계 인권 선언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아동 권리 관련 협약
1989 유엔 아동인권 협약 (1989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30) 「팔레르모 의정서」 서문

『UN 마약범죄 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주요 이주 경로를 따라 발생하고, 피해자의 80퍼센트 가량이 여성과 아동이다. 동 의정서상의 인신매매 개념은 기존에 있던 노예, 성매매, 강제노동, 가정노역 등 인권과 아동에 관련된 다양한 협약들의 영향을 받아 발전된 것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대 노예제 (modern slavery)”에 대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어졌다.<sup>31)</sup>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 또는 다른 형태의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또는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위해 금전적 보상이나 이익을 수수하여, 개인을 채용,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착취는 성매매, 기타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 적출 등을 포함한다.”<sup>32)</sup>

### 제3조 “인신매매”

- 가.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납치·사기·기만,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접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채용, 이송, 운송,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의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예속과 장기 적출을 포함한다.
- 나.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착취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동의는 무의미하다.
- 다. 착취를 목적으로 한 아동의 모집, 운반, 이전, 은닉, 또는 인수는 이러한 행위가 이 조 가호에 규정된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 라.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의미한다.

31) “Global treaties provide blueprint to ‘seal cracks’ in legal regime on human trafficking - UN anti-crime chief”, 『UN News Centre』 2016년 10월 27일 보도,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5417>

32) 「팔레르모 의정서」 3조 가항

〈표 III-2〉 「팔레르모 의정서」 3조 가항의 인신매매 정의의 조건

행위	채용, 이송, 운송, 이전, 은닉, 또는 인수	
목적	착취	매춘 및 성적 착취, 강제노동과 서비스, 노예제도 및 노예제도 유사 관행, 예속, 장기적출
수단	위협, 무력행사, 강압, 납치, 사기, 기만, 직권남용 등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 범죄의 처벌을 위해 당사국의 국내법상 의정서 3조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며 인신매매 범죄행위의 미수 행위나 공범, 그리고 인신매매를 위한 범죄조직 구성과 지시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요구한다.<sup>33)</sup> 또한 피해자 지원과 보호도 강조한다. 의정서를 채택한 당사국이라면 국내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법 체계와 행정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하고, 형사소송 단계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적절한 심의를 받도록 지원하고, 비정부기구나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회복을 위한 이행조치를 마련하고, 손해보상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보장하도록 했다.<sup>34)</sup> 이러한 「팔레르모 의정서」의 목적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2조**  
 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  
 나. 인신매매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  
 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

33) 「팔레르모 의정서」 5조 “범죄화” 참고

34) 「팔레르모 의정서」 6조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참고

의정서 9조는 인신매매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치의 확립을 요구한다. 연구, 홍보, 대중매체 캠페인 및 사회경제 사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요구하며, 여성과 아동이 인신매매에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빈곤이나 기회의 부재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들을 완화하는 다자간 협력과 조치들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인신매매가 발생하는 사회적 원인을 완화하고자 한다. 또한 인신착취, 특히 여성과 아동의 착취를 조장하는 ‘수요’ 감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방식을 포함한 입법과 교육, 사회, 문화적 조치들을 채택하고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항에서는 성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의 원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있다고 보지 않고 피해 발생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와 착취의 수요에 있음을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에 따라 채택국가들이 인신매매 예방과 억제를 위한 입법제도를 세우고 정책과 조치들을 취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인권의식을 읽을 수 있다.

인신매매 예방교육의 필요성을 밝힌 10조 2항은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관계당국 관리자 교육의 제공과 강화를 요구한다. 교육의 중점은 의정서의 기본 원칙인 “인신매매 예방, 인신매매범의 기소, 인신매매범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보호 방법”이다. 관리자 교육 역시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권장한다.

#### 제10조 제2항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예방을 위해 법집행, 출입국 및 기타 관련 관리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강화한다. 훈련은 이러한 인신매매의 예방, 인신매매범의 기소, 인신매매범으로부터의 피해자의 보호를 포함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리보호 방법에 중점을 둔다. 교육은 또한 인권, 아동 인지적 및 성 인지적인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을 감안하여야 하며, 비정부간 기구, 여타 관련 기구 및 기타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동의 인지 및 성인지 문제 고려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의정서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 범죄를 다루는 모든 정부관계 부처는 아동·청소년의 성인지 이해를 반영한 담당자 교육을 보장해야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과 사법, 정책 시스템 전반에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정부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과 시민 단체와 협력할 의사구조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제협약과 영미권과 유럽의 성매매를 포함한 성범죄 관련법들과 마찬가지로 팔레르모 의정서가 만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sup>35)</sup>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의 피해자 연령층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유엔 특별절차 제도 :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주요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2006년 유엔 총회의 결의로 설립된 유엔 총회 산하 보조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sup>36)</sup>는 아동의 매매와 성착취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1990년 인권이사회 결의 1990/68에 의해 ‘아동의 매매와 아동 성착취에 대

35) 「팔레르모 의정서」 3조 4항 참고. 국제법을 비롯해 영미권과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유엔아동인권협약」에 따라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한다.

36) 국제사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반 인권이슈에 대한 논의 및 개선 방안 모색,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유엔 시스템 내 인권의 주류화와 효율적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즉각적인 대응능력의 강화를 위해 연중 최소 3회 이상, 총 10주 이상 이사회를 개최하며, 이사국 1/3 다수결로 특별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http://www.mofa.go.kr) 설명 참조)

한 특별보고관(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을 임명하고 관련 특별절차 제도를 창설하였다.<sup>37)</sup> 아동의 매매와 아동 성착취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아동의 매매와 성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새로운 동향에 대해 파악하며,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아동 피해자의 사회 복귀와 재활과 관련하여 권고를 내리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특별절차는 현재 유엔 특별절차 중 유일하게 아동에 초점을 둔 절차에 해당한다.<sup>38)</sup>

현재는 네덜란드 출신의 드 부키치오 특별보고관(Maud de Boer-Buquicchio)이 임무를 수행 중으로, 본 특별보고관은 아동 매매와 성착취에 대한 여러 이슈 중 특히 온라인에서의 성매매와 다양한 수단에 의한 아동의 매매에 대해 관심을 가져 2015년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아동의 매매와 성착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유엔 가입국이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 국가적 차원

- (a) 특히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대한 선택의정서 등 관련한 모든 지역적, 국제적 조약을 비준할 것. 또한 모든 형태의 아동 성매매 및 성범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불법화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 체계를 마련할 것

37) 특별절차 제도란 중대한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특정 인권 주제에 집중하여 특별보고관을 임명, 연구 및 조사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 보고서를 기초로 인권이사회가 논의하는 절차로, 2016년 12월 국가별 특별보고관은 14명(북한, 미얀마, 이란 등)이며, 주제별 특별보고관은 독립 전문가와 실무그룹을 포함하여 43명이 임명되어 활동 중임.

38)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and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Retrieved at:

[www.ohchr.org/EN/Issues/Children/Pages/ChildrenIndex.aspx](http://www.ohchr.org/EN/Issues/Children/Pages/ChildrenIndex.aspx)

- (b)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요를 특별하게 다루는 법 체계를 마련할 것
- (c) 아동 성착취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사절차는 즉각 착수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d)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알선업자, 소개업자, 조력자 뿐 아니라 채정, 기술을 담당하는 자까지 공급 과정에 있는 모든 단계의 기관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 (e) 성착취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과 자산은 피해자를 위한 보상 정책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압류하고 몰수할 것
- (f) 국가 법은 성범죄 및 성착취의 아동 피해자가 범죄자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동은 성 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할 것
- (g) 포괄적이고 적절한 아동보호 시스템에 의하여 아동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아동에 특화된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범죄자가 구금, 조사, 기소될 수 있도록 할 것
- (h) 범죄자의 효과적인 구금, 조사, 기소 및 제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교육 전문가, 법 집행 담당자, 판사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훈련을 받도록 할 것
- (i) 형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아동이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아동이 다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아동에 초점을 둔 아동보호 시스템에 아동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j) 잠재적 범죄를 타겟으로 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할 것
- (k) 아동 성착취의 수요에 대한 모든 단계를 조사할 것 - 즉, 직접적인 관계자 뿐 아니라 중개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관계자 모두를 조사하며, 이러한 조사를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포괄적 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
- (l) 온라인 범죄와 여성 범죄자 등 범죄자에 대한 연구, 보호 및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와 성공적인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것
- (m)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있어 아동 피해자를 참여시키고 아동 피해자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또한, 아동이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
- (n) 아동, 사회 전체, 아동 권리 전문가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 성착취 수요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

한편, 드 부키치오 특별보고관은 2015년 일본에 공식 방문하여 일본의 미성년자 성 상품화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많은 수의 여성 아동이 원조교제를 경험하는 문제, 아동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외설 사진 또는 영상을 찍도록 하는 사업 등을 지적하며 아동의 성 상품화에 대한 사법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경찰이 아동에 대한 성 착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권고하였으며, 일본 사회에서 성 착취를 사회가 용인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도 공식 방문을 요청한 상태이다.<sup>39)</sup>

## 라. 기타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 (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창설된 유엔 산하 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가입국들의 상황을 심의하여 권고를 내린다. 2011년 대한민국의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가 있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청소년유해환경종합대책’의 수립 등을 통한 상업적 성착취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체계 구축, ‘성매매방지 대책 추진 점검단’의 설치 등을 언급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sup>40)</sup> 이러한 국가보고서의 심의 결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어떠한 수단에 의하건 성

39) 2017년 요청 관련 내용은

[http://spinternet.ohchr.org/\\_Layouts/SpecialProceduresInternet/ViewCountryVisits.aspx?Lang=en](http://spinternet.ohchr.org/_Layouts/SpecialProceduresInternet/ViewCountryVisits.aspx?Lang=en) 참고

40)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착취를 위하여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의 성 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그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41)</sup>

## G. 특별보호조치

### 성적착취

72. 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08 개정안을 환영한다. 동 개정안은 아동 성 착취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 임시 및 긴급생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범죄 피해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 및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윈스톱지원센터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 a) 아동 성폭력 급증과 높은 음란물 소비율
- b)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 c) 남아 또는 남성 대상 및 외국어로 진행되는 피해자 재활 서비스 부족
- d) 아동학대 범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삭감

73.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 a)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 b)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
-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 d)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 e)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피해자

41)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485-486쪽

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 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법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및 아동이 성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의 기소율 및 유죄율이 낮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를 표시한다.

7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유엔국제조약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기준을 고려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 (2)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며,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를 발간하여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2017년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15년 연속 1등급으로 분류되어, 인신매매 근절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실시한 선진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다.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 국무부는 대한민국이 남성, 여성, 아동이 성매매와 강제 노동의 수단이 되는 송출국이자 경유국, 목적국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다.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특히 빛을 진 피해자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현실, 예술 흥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국적 여성들이 유흥업소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문제, 한국 남성들이 외국으로 아동 성 관광을 가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미국 국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016년까

지 총 7,397명의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 대상 인신매매 예방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점, 공공 인식개선 캠페인의 실시와 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특히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인신매매 관련 신고에 대하여 총 562건을 수사한 결과 421건을 기소하고, 이 중 347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명시하였다.<sup>4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신매매의 정의를 협소하게 보아 실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낮은 형량을 부과하는 점 -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3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 성 착취가 직접적으로 인신매매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sup>43)</sup> 즉,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노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로 직접 이어지지 못하며,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국제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 가해져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 3. 영국

영국은 성매매를 개인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판단, 기본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지는 않으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거리에서 호객하는 행위, 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행위 등을 공공질서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하

42) 『한겨레21』 1033호, 2014년 10월 22일 등록,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161.html](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38161.html)

43) 미국 국무부 (2017)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p.236

고 있다. 이 때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해당 아동에 대한 성 착취, 즉 아동 학대로 보아 가해자를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한다. 또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학대와 폭력의 피해자로 인식하여 「아동법(Children Act 1989)」에 명시된 ‘도움이 필요한’ 아동보호체계에 편입, 지역 차원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피해를 지원하며, 당사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 가. 영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아동 성매매와 관련하여 영국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법 전체에서 ‘아동 성매매 (child prostitution)’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영국 정부와 의회는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는 해당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2000년대 초부터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아동 착취 (child exploitation)’로 교체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에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의 보호에 대한 지침 (Safeguarding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을 의도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지침(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으로 개정하였다.<sup>44)</sup> 이 지침은 명시적으로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을 “성 학대의 피해자이며,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은 범죄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법의 집행은 아동을 착취되도록 유도한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4) 국회의원 Ann Coffey MP의 연설, Banishing the term “child prostitute”, Second Reading of the Serious Crime Bill, 5 January 2015.

영국에서 아동의 성을 구매한 자는 「성범죄법 2003」에 의하여 처벌받는데, 이 법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특히 아동을 성범죄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아동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아동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행위, 아동 성 착취를 알선하고 조장하는 행위, 아동을 유인하여 성행위를 하기 위하여 만나는 행위 등을 규제한다. 이 때, 만 13세 미만 아동의 성적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sup>45)</sup>를 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무기징역 이하에 처해지며, 만 16세 미만 아동의 성적 서비스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한 만 18세 이상의 성인은 14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법 제47조).

한편, 영국 의회는 2015년 「중범죄법(Serious Crime Act)」을 개정하여, 실제로 성을 착취당한 학대 피해 아동을 모욕하는 용어이자 가해자(성구매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아동 성매매’ 및 관련 용어를 모두 수정하여 성매매에 연루된 모든 아동이 사실은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이며, 학대 피해 아동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45) ‘지불’은 금전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지불 의무의 이행 또는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이 포함되고, 할인하거나 지불 의무가 있으나 무료인 경우 역시 해당됨(법 제47조 제2항)

[표 III-3] 관련 용어의 법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sup>46)</sup>
(소제목)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를 통한 아동학대	(소제목) 아동 성 착취를 통한 아동학대
제48조 아동 성매매 혹은 아동 포르노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제48조 아동 성 착취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제49조 아동 매춘(child prostitute) 또는 외설물과 관련된 아동을 통제하는 행위	제49조 아동 성 착취와 관련된 아동을 통제하는 행위
제50조 아동 성 매매 혹은 아동 포르노를 알선, 조장하는 행위	제50조 아동 성 착취를 알선, 조장하는 행위

영국의 이러한 법 개정의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아동 성 착취 사건인 ‘로더럼 사건’과 ‘로치데일 사건’<sup>47)</sup>이 있었다.

46) 중범죄법 2015 제68조

47) 잉글랜드 북부의 로치데일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50명의 소녀들(13세~16세)이 회유와 협박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된 사건이다. 잉글랜드 북부 리즈에 사는 조안은 12세 때이던 6년 전, 집 밖에서 놀다가 폭력조직원들을 만난 후로 평범한 삶이 사라졌다. 그들은 처음에는 조안에게 듣기 좋은 말을 늘어놓았고 휴대전화를 사주기도 했다. 그 중 한 명인 42세의남성은 조안의 ‘남자친구’가 됐다. 그러나 1년도 채 못 가서 조안은 성매매의 길로 빠져들었다. 조직원들은 조안을 맨체스터, 로치데일, 브래드포드 등 영국 내 각지로 끌고 다니면서 방 안에 가둬놓고 성매매를 강요했다. 조안은 자신의 ‘노동’으로 얻게 된 돈은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다. 16세가 될 때까지 한 번 집을 나가면 몇 주씩 돌아오지 않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조안은 인신매매범들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어머니 크리스틴은 “그들이 어린 소녀들을 세뇌시켰다. 마치 최면을 건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방 안에 가두어도 딸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쳤다는 것이다. 조안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크리스틴에게 경찰들은 “조안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응하였다. (조안과 트리스틴의 사례: 경향신문 2010. 8. 15. 기

로더럼 사건은 영국 런던 북부 사우스 요크셔 주의 인구 약 25만명의 도시에서 1997년부터 2013년 사이 벌어진 16세 이하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알렉시스 제이(Alexis Jay) 교수에 의한 독립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제이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피해자의 규모는 1,4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파키스탄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가해자 집단은 주로 11세에서 16세 사이의 백인 여성을 타겟으로 하여 성폭력을 계속해왔다고 한다. 희생 아동의 대부분은 빈곤 가정 또는 가정 불화를 가진 환경의 아동들로, 담배나 술, 마약 거래를 통해 또는 주거지를 찾는 과정에서 가해자 집단의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 아동들은 지역 내, 또는 다른 도시에서 성매매 행위를 강요받았으며, 가해자 집단은 조직적으로 이들을 관리하며 아동의 성을 착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자 영국의 아동보호위원회는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보고서도 제출하였지만 경찰은 조각 증거만으로는 개입이 어렵고 조직적 범죄의 우두머리급을 잡아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입하지 않았으며, 지역 사회 역시 이를 비행 청소년의 일탈 행위로만 생각하며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3년 독립 보고서가 발표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후 특히 빈곤 가정의 아동이 어떻게 성 착취에 노출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sup>48)</sup>

이러한 사건이 논란이 되자 지역 사회 또는 중앙 정부는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

사 “영, 미성년 납치 성매매 강요 ‘충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52125275&code=9702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152125275&code=970205)

48) Alexis Jay OBE (2014), “Independent Inquiry into Child Sexual Exploited in Rotherham.

[https://www.rotherham.gov.uk/download/downloads/id/1407/independent\\_inquiry\\_cse\\_in\\_rotherham.pdf](https://www.rotherham.gov.uk/download/downloads/id/1407/independent_inquiry_cse_in_rotherham.pdf).

자는 그 바탕에 빈곤과 가정 불화가 자리잡고 있었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교육 당국, 행정 당국 모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에는 사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범죄의 예방이라는 점에서 영국 국회의 내무위원회(Home Affairs Committee)는 ‘그루밍(grooming)’이라는 개념을 법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sup>49)</sup> 그루밍이란 성인이 아동 성 매수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아동을 길들이는 행위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아동 성착취와 온라인보호팀(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에서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팀이 있어, 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알게 되면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에 알리고, 아동 음란물 소지 범죄자를 체포하고 있다.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명확한 아동 성 착취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동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sup>50)</sup>

## (2) 참고 : 영국의 「소년사법」 절차

영국의 「소년사법」 제도는 정권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 2010년 보수당이 집권함에 따라 2012년 「법률구조, 양형 및 범죄자 처벌법(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이 제정되고,

49) Home Affairs Committee (2013), *Second Report: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the response to localised grooming*.

50) 조진경 외 (2017) “성매매 유입 아동 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회 입법조사처 토론회 자료. 69면

「범죄와 무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66ZA조, 제66ZB조가 신설되면서 종래의 견책과 경고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소년주의처분(youth cautions)이 신설되었다. 소년주의처분은 10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하여 소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기소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 경찰이 부과한다.

소년주의처분으로 사건 종결 여부는 경찰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경미한 사안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범죄가 형사 법원(Crown Court)에서 심리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할 수 없으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이전에 처분이 내려진 적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도 전회 처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 전회 범죄와 유사성 내지 관련성이 없는 경우, 개별 사안을 고려할 때 주의처분을 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해자가 개입조치에 응할 의사가 있거나 이전 주의처분에 따른 개입조치에 이미 성실히 응한 경우, 범죄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등에는 예는 다시 소년주의처분을 내릴 할 수 있다.<sup>51)52)</sup>

일반적으로 소년주의처분보다 중대한 사안에 대한 처분으로는 소년 조건부 주의처분(youth conditional cautions)이 있는데, 이 처분은 2008년 「형사사법 및 이민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제48조, 「범죄와 무질서법」 제66G조에 근거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는 성인에 대한 조건부 주의처분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가해자를 기소하는 것보다 조건부 주의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51)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2013) Youth Cautions: guidance for police and Youth Offending teams.

52) 조윤오(2012), “영국 경찰의 소년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31호, 145-176면 참조.

경우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범죄와 무질서법」 제65조에 의해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에게 내려졌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분(prostitutes' caution)은 만 18세 미만 여성에게는 내릴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개정 전 가이드라인인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의 보호에 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sup>53)</sup> 개정 전 가이드라인의 관련 파트에 의하면, 경찰이 성매매에 연루된 만18세 미만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결정이 아닌 한 형사 또는 소년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해당 아동의 필요와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이 가이드라인은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모두 '아동 착취'로 교체함에 따라 '성적으로 착취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에 대한 지침'으로 개정되었고,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짐에 따라 관련 부분 역시 삭제되었다.

#### 나.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피해 아동의 보호와 관련,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이를 아동 학대로 인식하며,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체계를 규정한 「아동법(Children Act 1989)」을 적용하여 아동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지역 담당자가 해당 아동을 지방 정부의 아동사회 보호국에 의뢰하여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즉,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인지되며, 따라서 다른 학대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아동 서비스국 소속 사회복지사, 학교, 보건의료관계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지역

53) Department of Health (2000) "Safeguarding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Supplementary Guidance to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p13, 3.10.

아동안전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up>54)</sup>가 해당 아동, 가족 등 주변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영국에서 아동 학대는 중앙정부와 지역 사회가 모두 관여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영국의 중앙정부는 아동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협업할 것을 강조한다. 중앙정부는 통합적 관점에 근거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정부 지침<sup>55)</sup>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아동의 필요에 의해 담당자와 담당 부처들은 관점과 용어를 모두 통일하여 부처별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 보호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침은 2006년 아동학교가족부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2010년 교육부로 개편됨) 주도로 만들어진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아동 복지와 아동 보호를 위한 다기관 협력 지침’<sup>56)</sup>으로, 법적, 공적인 부분에 있어 각 부처와 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 지침 중 ‘성매매를 통한 학대 아동’ 파트는 아동이 성매매라는 선택을 하는 데에는 그 뒤에 빈곤과 강압, 착취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아동 성 착취를 “아동 성 학대의 한 형태

54) 위원회의 설치 근거: 2004년 개정된 아동법 제13조. 지역아동안전위원회는 아동서비스국 소속 사회복지사, 학교, 보건의료관계자, 경찰, 13-19세 청소년 지원시설(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됨)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아동 복지와 안전 관련 정책, 개발, 교육, 사례조사 등을 담당한다.

55) 지침의 법적 근거: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1970) 제7조에 의해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

56)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이며, 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강요하거나 조종하고 속여 (a) 피해자가 필요해 하거나 원하는 것과 교환하면서, (그리고/ 또는) (b) 가해자 혹은 조력자의 금전적 유리함이나 신분 상승을 목적으로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발생한다.”고 정의하며, 피해자는 성적 행동이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성적으로 착취당했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동 성 착취가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테크놀로지의 이용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sup>57)</sup>

#### 다. 소결

본 주제와 관련하여 영국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전체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가 ‘아동 착취’로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영국 중앙정부와 지역 사회 모두에서 통용되는 지침에도 반영되어, 성 매수 범죄 피해 아동이 발견되면 즉시 아동학대 피해자와 같이 아동보호체계에 편입되어 보호되며, 형법의 집행은 아동을 착취되도록 유도한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영국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의 성 착취에 관한 법적 가이드라인에도 드러나는데<sup>58)</sup>, 이 가이드라인은 경찰이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을 접할 때 경고나 주의를 주는 방식이 아닌, 해당 아동

57)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58)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검찰 및 경찰을 위한 안내서, retrieved at: [http://www.cps.gov.uk/legal/p\\_to\\_r/prostitution\\_and\\_exploitation\\_of\\_prostitution/#a18](http://www.cps.gov.uk/legal/p_to_r/prostitution_and_exploitation_of_prostitution/#a18)

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성매매 아동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된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인식하여 우선 해당 아동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후 요보호 아동 보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4. 미국

연방국가인 미국의 아동 성매매와 성 착취에 대한 법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동 성매매 당사자는 범죄자가 아닌 범죄와 아동 성학대의 피해자이며, 따라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2011년에 발간된 미국의 『아동 거래에 대한 복지적 대응책 수립 (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 수는 한 해 약 29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간주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으며, 이어 2011년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법 (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을 발의하여 청소년 성 보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한 바 있다. 이 새로운 법안(S.596)은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히 성 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경미한 수준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 가. 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미국의 경우 최근 각 주에서 아동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과 연방의 입장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는데, 두 입장 모두 미성년자 성매매 대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성매매 행위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는 완전히 다르게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적 시각에서 아동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의 2011년 법안에서는 아동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아동을 일반 비행청소년이나 성인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온전한 범죄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에게 처벌을 가하여 교화하는 대신, 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경험에 대해 개별 상담치료 및 지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방식으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sup>59)</sup>

이러한 입법적 노력은 법원의 법 해석으로 이어져, 법원은 아동이 성행위의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받았다는 사실이 성매매에 대한 기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만 13세 아동이 운전하고 있는 경찰관을 불러 구강 성교를 해줄 것을 제안하고 20달러를 받은 *In re B. W.* (Supreme Court of Texas. 313 S.W. 3d818) 사건에서 텍사스 법원은 형법과 가정법의 소년 관련 조항의 입법 의도를 고려할 때, 성인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당한 피해 아동이 소년범으로 해석되는 것은 입법 의도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판단 이전에 심리학자의 전문가 의견을 채택하여 해당 아동이 돈을 받기 위해

59) 이유진 외 (2013), 위의 글, 96-97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아동은 성인인 가해자에게 이용되고 통제되는 것일 뿐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아동은 돈을 지불받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이며, 아동 성매매 대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발달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2010년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아동 성매매 대상 아동을 피해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성매매를 이유로 체포된 아동은 성 착취의 피해자로 우선 추정해야 하며, 국가와 주는 그들에게 맞는 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는 대체로 동일하다. 이 법에 의해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보호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계속해 성매매를 해왔거나,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경우 외에는 처분되거나 처벌받지 않고 (소년)사법 절차가 아닌, 아동보호 절차를 거쳐 상담, 의료, 주거 지원 등 학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를 받는다. 현재 코네티컷,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뉴욕, 버몬트,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 착취당한 아동을 위한 면책법(Safe Harbor Law)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법을 제정, 시행 중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만 18세 미만 아동의 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성매매 벌금에 최대 2만5천달러가 추가된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는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을 아동학대의 피해자로 보는 관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sup>60)</sup> 이러한 관점에서 캘리포니아는 2011년 「아동 매매, 착취와 성노예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연방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아동의 성매매에 있어서

60) West's Annotated California Codes Section. 261.9: Solicitation to engage in prostitution with a person under age 18 – additional penalties.

는 아동의 행위 및 대가의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과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며,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동과 성적인 행위를 한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 학대의 피해자인 만큼, 피해를 입은 아동들은 그들을 상업적, 성적으로 착취한 성인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와 자원에 접근하기 위함이다.

특히 일리노이 주에서는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 교화하기보다는 그들을 구출하고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 「아동안전법(The Safe Children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청소년 성매매(juvenile prostitute)’라는 용어를 형법에서 삭제, 청소년의 자기 판단에 의한 자발적 성매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추가적인 구금은 또 다른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고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큰 해가 되므로, 그들을 범죄자로 인식해 형사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아닌, 포주로부터의 협박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사만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의 주된 내용이다.

한편, 미국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띤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라바마주는 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등의 주와는 달리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을 무조건 성 착취 아동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와 관련된 법에 “(주와 연방의) 관련 법의 목적에 의해,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sexually exploited child)’이란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 중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임이 입증된 아동은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되거나 기소되지 않는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기소되는 경우에 소년법원은 이 아동이 성적으로 착

취된 아동인지, 아니면 다른 연관된 범죄로 인해 기소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 나. 미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피해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는 성 매수 범죄 피해 아동을 가정법원의 보호를 받아야 할 착취 피해 아동으로 인식한 뉴욕 주의 「착취 아동을 위한 면책법(The Safe Harbor for Exploited Children Act)」을 참고할 만하다.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아동을 소년사범들을 위한 보호 시설에서 조사받도록 한다면 이들이 성 착취 과정에서 경험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이 이야기되었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법에는 그들이 성 착취와 학대로부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지역 기반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2000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아동 성매매 및 성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행정각서(Executive Memorandum)를 공포한 이래로 아동 성매매와 성 착취와 관련하여 팔레르모 의정서를 반영한 3p(prosecution, protection, prevention and partnership: 기소, 보호, 방지와 협력) 패러다임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sup>61)</sup> 약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3P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아동 성매매 대책이 주로 피해자에 대한 개별화된 욕구

61) 김종철, 최민영 (2012),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56면.

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성매매 여자 청소년이 인구사회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빈곤 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고, 비자발적 가출을 한 경우가 많아 성매매 이전의 복잡한 문제 환경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sup>62)</sup>

이어서 미국은 현대 노예제도에 해당하는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에게는 효과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0)」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2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인신매매(Severe forms of trafficking in persons)’를 정의하며 타인에게 무력, 사기 또는 강압을 통해 상업적 성행위를 하는 행위와 18세 미만인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포함하였다.<sup>63)</sup> 또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sex trafficking)’라는 용어를 법에 소개하며, 상업적인 성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을 모집, 은닉, 이송, 공급 또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즉,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하면, 성 착취와 관련된 인신매매에는 무력, 사기, 강압, 감금, 위협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사람을 모집, 은닉, 이송, 공, 또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는 행위가 포함되며, 18세 미만인 아동이 상업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64)</sup>

아동 성매매 피해자, 즉 아동 성 착취 -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미국 연방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피해자의 안전한 통합(integration), 재통합(reintegration), 그리고 정착(settlement)이다.<sup>65)</sup>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전화상담 서비스, 문화적으로 적합한 보호시설에 거주

62) 이유진 외, 위의 글, 108면.

63) 김종철, 최민영 (2012), 위의 글, 56-60면 참조.

64) 22USC 7102(4)

65) US Department of State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자의 존엄성과 안전을 존중하여 적합한 지역사회 또는 가족에게로 통합 또는 재통합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 구성원의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sup>66)</sup> 피해자는 연방 정부의 보호 아래 있는 동안 범죄 피해자로서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되지 않으며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인신매매 범죄자가 협박이나 보복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위협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고 신분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가 미국의 해당 지방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수임료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미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국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의 해당 관계자들이 아동 성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 판단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 및 지방 공무원에게도 피해자 파악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무부 산하에 인신매매감독·방지사무소(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를 두어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이끌고 있다. 이 부서는 미 의회의 명령에 따라 해마다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의 추진 상황을 독려하고 있다.<sup>67)</sup> 인신매매감독·방지사무소 정책자문인 하인리히에 따르면 성매매를 포함한 인신매매는 인권 규범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법집행 조치와 피해자 보호, 예방이 필요한 범죄로서, 세계 각국의 범죄 방지를 위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미국은 세계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성매매

66) 김종철, 최민영 (2012), 위의 글, 56-60면 참조.

67) Heinrich, Kelly Hyland. "Ten Years After the Palermo Protocol: Where are Protections for Human Trafficking Victims?" *Human Rights Brief* 18, no.1 (2010): p.2

를 포함한 인신매매를 나라마다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사회를 지원하며 기소, 보호, 예방의 대책들이 상호교차 발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인신매매의 처벌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것은, 아동의 성 착취가 인신매매에 해당함이 증명된다면 법원이 인신매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법적 배상(mandatory restitution)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sup>68)</sup> 또한, 인신매매 범행과 관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이나, 그 범행을 조장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은 정부가 몰수하도록 하였다.<sup>69)</sup>

#### 다. 소결

앞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와 같이 미국 역시 성 매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성 학대의 피해자이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왔으며, 각 주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왔다. 이에, 현재 미국에서는 성 착취 피해 아동은 보호 이후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경우 외에는 처분 또는 처벌받지 않고, 소년사법 절차가 아닌 보호절차를 거쳐 학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 착취의 목적으로 아동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팔레르모 의정서」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에, 법원은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 성 매수 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범행과 관련된 재산은 정부가 몰수할 수 있게 되었다.

68) U.S. v Seljan, 512F.3d 1203 (2008).

69) 김종철 외 (2012), 위의 글, 62면.

## 5. 캐나다

캐나다는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에 가장 먼저 서명한 국가로, 의정서의 비준 이후 「이민 및 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제정 시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캐나다로 유입되는 초국적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 인신매매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인신매매를 목적으로 증명 서류를 압수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인신매매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형법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는 특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존 형법의 성매매 장소 운영 및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고객을 목적으로 대화하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에 대하여 2013년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이 성 판매자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되어 오히려 이들이 음지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신체의 자유와 개인의 안전을 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위헌이므로 1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sup>70)</sup> 이에 캐나다 정부는 성 구매자와 타인의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 두 그룹만을 범죄자로 규정하며, 미성년자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보호 규정을 강화한 「지역사회와 착취 피해자 보호법(Protection of Communities and Exploited Persons Act)」의 제정을 통해 형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현재는 2005년과 2014년의 형법 개정에 의하여 성 구매자와 성매매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보는 성매매 알선업자는 인신매매 행위자로 처벌 대상에 속하며 성 구매자의 경우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자는 가중처벌되고 있다. 또한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종교 기관,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만한 장소에 성

70) *Canada (AG) v Bedford*, 2013 SCC 72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2배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18세 미만 아동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에 의존해 살거나 이를 지원, 교사, 성매매를 위해 협박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어 14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 가.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아동이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아동들을 부모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성매매 행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 성적으로 학대, 착취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 -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서스캐처원, 에드먼튼 주 등 - 는 성 착취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피해 아동이 발견 즉시 적절한 보호를 포함한 지역 차원에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 성매매 근절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에 의해 새로운 법률 조항들과 함께 성 착취 피해아동 지원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한편, 캐나다 앨버타 주는 「성매매 연루 아동 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Act)」을 통해 성매매 연루 아동을 발견하면 지역사회의 보호 프로그램 대상자로 지정, 응급조치, 보호, 조사 등을 위해 72시간 내로 보호 안전 쉼터에 머물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구금에 해당하며,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법으로 소관 부처 역시 아동 복지 관련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대 피해자에 해당하는 아동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방 법원의 판결 이후 관련 법을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을 성 학대에 대한 피해자로 인식, 보호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성 착취 아동 보호법(The Protection of Sexually Exploited Children Act)」<sup>71)</sup>으로 개정된 바 있다. 현재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해당 아동을 안전한 지정 시설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식적인 위탁 명령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72)

아동 성매매가 해당 아동의 모집, 이송, 수용, 숨김 등의 행위와 연결되는 경우는 아동의 인신매매 행위로 포섭되어 가중처벌되는데, 이 때 아동 성착취 행위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이 되어 피해자의 동의는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온타리오 주 등 일부 주는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 주거 지원을 제공하는데, 주 차원에서 이들의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었던 포주를 상대로 지원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 나.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캐나다에서는 아동의 성매매 및 성 착취의 근절을 위하여 다양한 관련 기관의 연계를 강조한다. 특히 아동 사회복지 담당자, 관련 기관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및 관련 시민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매매 피해 아동을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구조, 지원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관련 단체의 활동은 피해 아동의 핫라인 운영, 경찰의 인터넷 아동 성매매 특별 전담팀 가동, 쉼터의 제공, 아동권리 지원 기관 등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기관들의 연계가 개별 주나 지역사회에 한정되어

71) 본 법의 목적은 “아동과 가정의 안전, 안정과 행복은 앨버타 정부의 가장 큰 관심”에 해당하며, “성 착취 아동은 성 학대 및 피해자로, 보호 대상자에 해당함”이며, 정부가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과 지역사회를 돕는데 전념하고,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여 아동이 성적으로 착취되는 것을 종식하고자” 한다고 명시됨.

72) 이유진 외(2013), 위의 글, 147-149면.

있어 국가 전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매매나 성 관광 문제에 국가적 수준의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73)74)</sup> 이에,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는 다양한 아동 보호 기관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관련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공유하여 보다 원활하게 상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각 기관이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들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극대화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현재는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단기적 지원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피해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적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여 일반인 사이에서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sup>75)</sup>

#### 다. 소결

위 국가들과 달리 캐나다에서는 성매매와 관련, 성 구매자와 타인의 성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는 자만이 처벌받으며, 성을 파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성매매에 연루된 여성은 성 매수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되며, 아동이 연루되는 경우에는 성적으로 학대, 착취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주로 원주민 아동의 빈곤, 가족 부양 능력 부족,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교육 부족 등의 문제가 아동의 가출과 주거 부정 문제와 연결됨이 지속

73) 이유진 외(2013), 위의 글, 145면.

74)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7

75) 이유진 외(2013), 위의 글, 146면.

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아동 성매매 문제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적인 시각으로 접근되어야 해결될 문제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아동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캐나다 당국의 정책 활동 및 지원을 요구하는 국가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 6. 스웨덴

### 가. 스웨덴의 성매매 근절 정책: 수요 차단을 통한 성매매 폐지

1949년 유엔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 억제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sup>76)</sup>을 비롯한 국제 협약에 서명하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궁극적으로는 성매매 폐지 원칙을 지향한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은 오랫동안 성매매제도를 개인의 일탈행위이거나 경제활동으로 파악했고, 성매매제도를 윤리적으로 기존의 가족과 결혼제도를 우선하는 성윤리에 반하며 성관련 질병을 퍼뜨려 공중보건을 해치는 사회악으로 보는 사회인식 속에 법적으로 규제했다. 20세기 이전까지 전통적인 유럽의 성매매 정책은 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을 처벌하고 거주와 이동을 제한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공중보건을 위해 성병 검진을 포함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규제와 방지의 성매매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현재 스웨덴

76) <http://www.ohchr.org/Documents/ProfessionalInterest/trafficpersons.pdf>  
이 협약 서문은 “성매매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의 해악이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와 양립불가능하며 그 가족과 공동체의 안녕이 위협에 처하게 함에 따라” 협약을 제정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을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에 주목하여 성매매 법제도의 방향을 성매매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에 두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는 흔히 성적인 목적의 인신매매나 폭행, 알선, 마약 거래 등과 같은 거대 조직범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도 심각한 해악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sup>77)</sup>

특히 스웨덴은 성매매의 수요 차단을 통한 성매매(sex trade) 근절을 성매매관련 국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성관계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혹은 성구매(sex purchase)를 범죄행위로 보고 구매자(sex buyer)를 처벌한다. 인간의 몸을 거래한다는 점에서 성매매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구닐라 에크베르그(Gunilla S. Ekberg)에 따르면, 스웨덴 성구매자 처벌 입법은 “성매매는 여성과 아동에게 중대한 위협이자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경제적·인종적·민족적으로 주변화되고 억압받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입장을 배경으로 한다. 때문에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이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야 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빈곤 감소, 지속적 발전, 젠더적으로 평등한 사회 실현, 여성과 여성 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p>78)</sup>

197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의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성매매가 젠더평등의 장애가 되며, 성구매는 여성에 대한 성착취임을 지적했고, 1990년대 스웨덴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반성매매 의제는 본격적으로 학계와 의회, 정부 논의를

77) Ministry of Gender Equality, *Legisla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rchived 2010-03-06 at the Wayback Machine*, Government of Sweden, 4 February 2009

78) Gunilla S. Ekberg, “Briefing – Swedish Law and Policies o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11), pp.1-2, <http://www.sccjr.ac.uk/wp-content/uploads/2012/11/Briefing-Law-and-policies-on-prostitution-and-THB-Sweden-1203082.pdf>

거치면서, 성구매자를 처벌함으로써 성매매의 수요를 차단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국가적 합의에 이른다. 성매매를 반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페미니즘 이론가와 활동가들의 주장이 공론화되고,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 발표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인권을 주요 외교정책으로 하는 스웨덴 정부와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부응하면서, 드디어 스웨덴은 1999년 세계 최초로 성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에 처하는 법률을 시행하였다.<sup>79)</sup>

#### 나. 스웨덴 형법6장

1999년, 스웨덴은 성구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여성폭력방지법(Kvinnofrid Law)」의 시행을 시작으로 성구매를 금지 처벌하고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범죄자 아닌 피해자로 간주하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2004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형법6장에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포함, 강간, 성적 강요, 성적 착취, 아동 성폭력, 아동과 성인에 대한 성구매, 성구매 알선 등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처벌하는 법령을 통합하였다. 2008년에는 아동과 성인에 대한 인신매매 대응 정책을 위한 「성매매와 성적 의도의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 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 against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을 수립하여 성착취 인신매매로서의 성매매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215백만 크로나의 예산을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원하고, 2011년 스웨덴 범죄예방위원회(Brottsförebyggande rådet, 줄여서 Brå라고 함)을 발족한다.

스웨덴은 1999년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2년에 성착취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조항이 형법에 규정되었고 형법 6장에 강간, 성적 강요, 성적 착취, 아동 성폭력, 근친강간,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구매, 성매매 알

79) 여성인권진흥원(2013), 『유럽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실태』(2013), 59-60면.

선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그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다루었다.<sup>80)</sup>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벌금 및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알선 및 조장하는 경우 징역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웨덴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성구매를 방지하는 입법제도의 변화는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성매매가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나 폭행, 알선, 마약거래와 같은 대규모 조직범죄를 포함하고 관계있다는 점에서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매우 위험하고 유해하다는 생각이 공론화되었고 입법 자체만으로 억지력을 갖는다고 한다.<sup>81)</sup> 성구매자를 범법자로 규정함으로써 형량이 크지는 않으나 성매매의 범죄행위를 성구매(sex purchase)로 분명히 하고 구매의 대가도 금전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고가의 음식과 선물이 포함된다. 성적 행위도 ‘성교(intercourse)’ 아닌 ‘성적 관계(sexual relations)’와 성적 활동(sexual activity)을 전제로 하여 삽입성교 이외의 유사 성교행위를 포함한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sup>82)</sup> 또한 행위자는 범죄 여부나 남녀 구분 상관없이 구매자와 판매자로 표현하여 젠더 중립성을 지향했다. 행위에 따라 연령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18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minor)’나 ‘청소년(juvenile)’ 구분 없이 ‘아동’으로 칭했다. 그러나 아동과의 성적 관계는 아동 성착취 범죄로 다루지며, 대가성일 경우 아동에 대한 성구매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80) 여성인권진흥원(2013), 61쪽

81) <http://www.government.se/articles/2011/03/legislation-on-the-purchase-of-sexual-services/>

82) 스웨덴 형법 11조-12조

<표 III-4> 스웨덴 형법 6장 아동 성매매 관련 내용

조	범죄 내용	형량
3조 의존적 지위를 이용한 성착취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의존으로 인한 관계를 심각하게 남용하여 성적 행위에 가담시킴	최대2년 이하 징역
	범죄가 중할 경우 피해자의 수, 폭행 방법과 수단, 가담의 정도, 잔혹성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판단	최소6개월 최대4년 징역
4조 아동 강간	만15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 혹은 폭력성이 심각한 유사성행위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 가해자의 자녀나 그와 비슷한 관계를 가진 아동에 가한 위에 명시된 범죄 행위 공권력의 결정으로 보호와 감독의 책임이 있던 가해자가 범한 위에 명시된 범죄행위	최소2년 최대6년 징역
	위에 명시된 범죄가 중대할 경우 가해자가 폭력 혹은 범죄행위의 협박을 하였는지,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아동을 폭행하였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폭행에 가담하였는지, 가해자가 사용한 방법이나 피해자의 어린 연령을 고려했을 때, 가해자가 특정한 잔혹함 혹은 잔인함을 보였는지에 대한 사실여부를 특별히 고려한다.	최소4년 최대10년 징역
5조 아동 성착취	심각성이 덜한 아동 성착취	최대4년 징역
6조 아동 성학대	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4조와 5조에 명시된 범죄 외의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조항4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명시된 경우와 같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경우	최대2년 이하 징역

조	범죄 내용	형량
	범죄가 중할 경우 피해아동과 친밀한 정도, 신뢰와 신분 남용하여 이득 취득한 경우, 피해자의 수, 폭행 방법과 수단, 가담의 정도, 잔혹성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판단	최소1년 최대6년 이하 징역
8조 아동 성착취 2: 성적 자세 강요	만15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 자세를 취하는 행위에 참여하거나 그 행위를 조장 또는 착취하는 경우, 성적 자세를 취하는 행위를 위한 아동착취 이러한 자세 행위가 피해자 미성년자의 건강 혹은 발달에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 조항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이러한 범죄를 지은 경우	벌금형 또는 최대2년 이하 징역
	중대한 아동착취 대규모 범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 착취의 잔혹성 정도 고려	최소6개월 최대6년 이하 징역
9조 아동 성구매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지불의 대가로 성적 행위에 가담시키는 경우 지불이 약속되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지불될 경우에도 적용	최대2년 이하 징역
10조 아동 성추행	기타 만15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성적 의미가 담긴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경우 타인에게 불쾌함을 야기시키는 태도로 대하거나 언어나 행동을 통해 타인의 성적 고결함을 침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벌금형 또는 최대2년 이하 징역

다.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정책 변화 및 현황

스웨덴 정부는 2010년 성매매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효과와 그 영향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sup>83)</sup>

- 거리 성매매 피해자는 1999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 인터넷 확산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한 한 성매매가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했다.
- 이웃 국가들에서 성매매가 증가하였으나 스웨덴에서는 전국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 성구매 금지가 스웨덴에서의 조직범죄 구성을 억제했다.
- 성구매 금지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증가했다<sup>84)</sup>

#### (1) 2008년 국가 행동계획

2008년 스웨덴 정부는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인신매매 척결을 위해 성매매와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국가행동계획(Action Plan against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 2008)”을 발표한다.<sup>85)</sup> 이 계획에 따라, 2007년과 2010년 사이 스웨덴 정

83) Swedish Institute, “Selected extracts of the Swedish government report SOU 2010:49: —The Ban against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n evaluation 1999–2008”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스웨덴 외교부에서 제공받은 영문 번역을 참고하였다.

84) 보고서에 의하면, 성매매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는 사회 의식에서 성구매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법 시행 전에는 성매매가 지하화되거나 주거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등 대중의 우려가 있었으나 시행 이후 조사한 3회의 조사에서, 조사 응답자의 70%가 성구매의 범죄화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하며 대중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한다. (p.9)

85) 스웨덴 국가행동계획 원문:

부는 약 215백만 크로나(한화로 약 35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인신매매 예방을 위해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스톡홀름 주 정부는 택시회사, 식당 및 호텔 직원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직접 마주칠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했다. 국가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기에 처한 이들의 보호와 지원 강화: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보건·사회 복지·청소년 클리닉·주거지원 등에 관한 실무자 교육, 쉼터용 주거 공간 개설, 성적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재활, 약물 남용 및 중독 집중치료, 피해자의 안전한 귀가(국)

예방활동 강화: 성구매자 대상 조치의 평가 및 개선, 청소년 대상 예방활동 집중강화, 청소년 대상 활동 자료 및 방법 개발, 학교 교직원 대상 심화교육, 성매매 종사자 입장에서의 노력 평가 및 향상, 위약상황의 여성을 위한 조치, 공공행정 윤리 가이드라인, NGO 활동 지원

사법체계의 기준 및 효율성 향상: 성적 목적의 성매매·성적 목적의 인신매매 대응활동을 위한 특별 기금조성, 인신매매 국가보고관, 사법과 검경 및 이민국 직원 대상 교육, 아동에 주목하는 수사 협조 가이드라인, 인신매매 처벌규정 확대, 형사상의 상해 보상 평가, 비자발급과 거주 신청과 연계에 집중 한 예방 강화

국내·외 협력 증대: 아동을 위한 지역 단위·국내·국제 수준의 협력 확대, 발탁해 지역과의 협력, 국내 협력프로그램 개발 강화, 스웨덴 정보기관

---

[https://ec.europa.eu/anti-trafficking/sites/antitrafficking/files/info\\_sheet\\_action\\_plan\\_against\\_prostitution\\_and\\_human\\_trafficking\\_for\\_sexual\\_purposes\\_en\\_1.pdf](https://ec.europa.eu/anti-trafficking/sites/antitrafficking/files/info_sheet_action_plan_against_prostitution_and_human_trafficking_for_sexual_purposes_en_1.pdf)

2016년 스웨덴 정부는 유엔 안보이사회 1325 결의안에 따라 Sweden's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s Resolu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2016 - 2020을 발간한다.

### 활동 개발

인식제고: 인식제고를 위한 특별기금 조성, LGBT(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인 자들의 상황 연구, 청소년의 성착취에 대한 경험 및 태도와 노출 상황 연구, 남녀 아동 성착취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동성간폭력, 성매매 및 성적 인신매매 관련 연구 및 조사 실시<sup>86)</sup>

### (2) 성매매 문제에 대한 스웨덴 정부 대책

2008년 인신매매 실행계획을 개발한 ‘통합젠더평등부(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전담하지만, 법무부, 사회부, 노동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도 담당 영역에 따라 원활히 협력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 위탁체계 매뉴얼 (National Referral Mechanism)”<sup>87)</sup>을 발표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87)</sup> 스톡홀름 주정부(County Administrative Board of Stockholm) 안에 국가협력처(National Coordinators Office)를 두고 성매매 및 인신매매 담당 국가협력관(National Coordinator against Prostitution and Trafficking)을 통해 스웨덴 전국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협력관은 성구매 범죄와 성착취 인신매매를 담당하는 경찰, 사회복지사, 이민위원회, 검찰 소속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략지원팀(National Methodology Support Team)’을 운영하여 중앙부처와 주정부, 시민단체 및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인신매매와

86)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Sweden, “ACTION PLAN AGAINST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 스웨덴 외무부에서 제공한 영문 번역 자료를 참고함.

87) 스톡홀름 주 행정부, 위탁체계매뉴얼(National Referral Mechanism) 원문 제공, <https://rm.coe.int/168070acc0>

성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 성매매를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의 지원은 스웨덴 사회복지부가 주관하는 사회복지 정책 안에서 이뤄진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및 의료지원 시스템 외에도 스톡홀름, 말뫼, 괴테보르그에는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탈(脫)성매매 지원을 위한 부서가 있어서 주정부와 민간단체,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여 성매매 종사자들과, 스웨덴 내국인 아동과 성인 성매매 피해자,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아웃리치와 상담을 제공하며 이들을 위한 쉼터와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피해신고상담 전화 “스웨덴 여성 도움의 전화(Kvinnofridslinjen)”을 통해 성폭력과 함께 성매매, 인신매매 등의 폭력과 착취의 위험에 처한 여성들을 상담한다.<sup>88)</sup>

## 라. 소결

스웨덴 정부 성매매 피해자 보호체계는 2008년 국가행동계획 발표 이후 국가정책의 수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인권의식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복지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수준 외에 성매매 피해자 중심의 보호시스템을 마련했다. 스웨덴 성 구매를 방지하는 입법제도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스웨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들에 성매매 방지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를 가져왔다. 스웨덴의 성매매 금지법은 인신매매를 기반으로 한 성매매에 유효하여 길거리 매춘이나 업소에서의 성매매를 단속에 유효한 방식으로, 최근 세계적인 추세인 온라인을 이용한 성구매 단속과 처벌

88)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3), 『유럽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실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70-75면 참조.

에 대해서는 현재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적으로 대처해가고 있다. 「구매자 처벌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해자 처벌 형량과 벌금의 규모로 볼 때, 중대 범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에 대한 처벌 효과는 의문이지만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인식변화 만큼은 그 어떤 규제방식보다 주효하고 있을 수 있다. 이웃나라의 심각성과 비교할 때 성매매와 연관된 조직범죄 억제에도 효과적으로 보인다.

## 7. 독일·오스트리아·네덜란드

성매매제도 폐지 원칙의 구매자 처벌 입법제도를 갖고 있는 스웨덴을 제외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성매매의 사회적 영향을 염두에 둔 성매매 규제를 입법원칙으로 채택한다.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인정하며 규제주의를 채택한 대표적인 국가인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경우, 성매매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인식에 따른 입장은 다르지만, 성매매로 인한 개인의 피해와 사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에 관련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판단에 따라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 세 나라들의 입법제도는 성매매 여성의 등록과 건강 검진의 의무,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성매매 금지, 거리 매춘과 구매자의 성매매 탐색 행위 금지 등을 공통으로 하며, 성매매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독일의 경우 성매매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인정하기도 한다.

반면, 성매매가 합법인 독일이 심각해져가는 성매매 연관 폭력과 불법행위들에 대처하기 위해 최근 『성매매 종사자 보호를 위한 성매매 거래 규제에 관한 법안(Entwurf eines Gesetzes zur Regulierung des Prostitutionsgewerbes

sowie zum Schutz von in der Prostitution tätigen Personen)』을 통과시키고 시행하게 된 사실에서 보듯<sup>89)</sup> 성매매에 따른 폭력과 경제적 성적 착취에서 성판매자를 보호하려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중시한다.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은 엄중히 처벌받는다. 불법 이민자들이 자국민보다 훨씬 강도 높은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임에도 불법 성매매 낙인으로 인해 법적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sup>90)</sup>

### 가. 독일

독일은 1927년부터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제도를 채택했으나 자유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매매 관련 규제들이 개정되거나 삭제되었다. 하지만 이후 국가가 성매매를 허가하면서 동시에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 및 억압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2001년 법개정을 통해 성매매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를 해지하였다.<sup>91)</sup> 그러나 현재에도 외국인과 아동에 대한 성매매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89)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2017년 6월 30일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을 공표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웹사이트 국제동향 참고,  
[http://www.kwdi.re.kr/noticeView.kw;KWDI\\_KOR=FF32DFA52A7D5881EE72982CC0008AB7.WORKER\\_KWDI?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026&pnum=4&cnum=1&ntNo=1515&dvsn=&src=&srcTemp=&currPg=1](http://www.kwdi.re.kr/noticeView.kw;KWDI_KOR=FF32DFA52A7D5881EE72982CC0008AB7.WORKER_KWDI?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026&pnum=4&cnum=1&ntNo=1515&dvsn=&src=&srcTemp=&currPg=1)

독일 정부의 발표내용은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prostituentenschutzgesetz-tritt-in-kraft/117224>

독일 공영방송 뉴스 Tagesschau 2017년 7월 1일 자 보도

<https://www.tagesschau.de/inland/prostituentenschutzgesetz-107.htm>

90) Sullivan, M. (2005), "What happens when prostitution becomes work?",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91)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3), 82쪽

(1) 형법 개정

[표 III-5] 독일의 형법의 개정<sup>92)</sup>

개정 전	2001년 개정 후
개인적인 성매매는 합법이며 대신 사회적 피해를 규제	성매매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 해지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규제 범위 상이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정기적 의료검진 의무화 의료검진증을 항상 소지하게 했으며 미소지시 체포가능.	폐지 성노동자들은 자유롭게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보험의 혜택 역시 받게 되었다
과세대상 민법에 의해 성매매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무효한 계약으로 간주되어 성매매에 의한 소득을 법적 보호 받지 못함. 성매매 종사자들은 성적 서비스 제공 후 금전적 보상 지불을 거절하는 성판매자들에게 항의할 수 없음.	개인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는 숙박, 거주 및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성매매로 얻은 소득은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계산 성매매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 가산 (실제 성매매 산업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 그 실효성은 의문)
성매매 종사자의 착취에 대해 어떠한 법적 구제방안도 없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노동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종사자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자립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 가능
	“외국인의 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사람을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개입시키는

92) 2001년 독일 형법 개정 전·후의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82쪽-85쪽 참고.

개정 전	2001년 개정 후
	<p>것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5년 이상의 징역과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외국인의 약한 지위를 알고 있는 자를 협박 및 억압하여 그 사람을 성적 서비스에 종사토록하거나, 21세 이하의 자를 인신매매 한 경우 형벌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로 늘어난다. 또한, “중한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폭력이나 협박, 위계를 사용하여 사람을 유괴하여 성매매에 종사시키거나, 전문적으로 외국인의 약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매매 종사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모두 중한 인신매매로 규정하여 1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p> <p>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은 3년에서 5까지의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한다.</p> <p>성매매에 대한 알선 불법                      “누구든지 개인들이 모여 성매매에 종사하여 개인적이고 경제적 의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적인 성매매업을 유지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지 숙박, 거주, 그 외 부수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은 합법.                      단순한 숙박이나 부수적 서비스의 수준을 넘어 성매매 종사자들 개개인의 독립적, 경제적 생활을 ‘관리하거나 간섭하는’ 포주 행위는 불법이다.</p>
	성매매에 대한 광고 금지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종사하는 자를 착취하거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타인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감시하는 것은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성매매 종사자의 개인적 존엄성과 그들의 개인적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거나 삶의 수준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적인 포주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의 생활을 감시하거나, 수입 및 성구매자의 숫자를 확인 하는 행위도 같은 맥락이다.

[표 Ⅲ-6] 성매매 종사자의 착취에 관한 「독일 형법」 내용

(2013년 개정)

180조 미성년자 에게 성적활동 종사 원인 제공	1항) 16세 미만인 자에게 제3자 또는 제3자의 면전에서 성적 활동 종사를 조장하거나 16세 미만인 자에 대한 제3자의 성행위를 조장하기 위한 1. 중재자 행동 2. 기회 야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2항) 18세 미만자를 유인하여 대가를 받고 제3자 앞에서 성적 활동에 종사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위해 제3자의 성행위를 감당하게 하거나 중재와 같은 행동으로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3항) 양육, 교육, 돌봄으로 인해 자신을 신뢰하거나 고용 또는 노동관계 안에서 종속된 18세 미만인 자를 유인하여 양육, 교육, 돌봄과 연관된 의존을 남용하여, 제3자와 또는 제3자 면전에서 성적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제3자의 성행위를 감당하도록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④ ②와 ③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93) 181b조의 보호관찰 대상은 범죄의 가해자이다.

<p>180a조 성매매 종사자 착취</p>	<p>①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금전적 의존에 처하게 하는 영업을 상업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 같은 처벌 가능 1. 성매매를 실행하기 위해 18세 미만자에게 주거 내지 상업적 숙소 제공 2. 매춘의 실행을 위하여 주거를 제공한 타인에 대하여 매춘을 독려하거나 매춘과 관련하여 착취한 자</p>	<p>3년의 지역 또는 벌금형</p>
<p>181a조 성매매 관리</p>	<p>① 성매매 종사자 착취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타인의 성매매 종사행위를 감독하여 성매매 종사의 장소, 시간, 정도 및 기타 상황을 결정하거나 성매매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를 위해 종사자와 1회성이 아닌 일반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②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독립을 훼손하기 위해 타인의 성매매 종사를 권유, 일반적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성관계 알선</p>	<p>6개월에서 5년까지 징역</p>
<p>181b조 보호 관찰 명령</p>	<p>제174조 (피보호자에 대한 성적 학대)에서 제174조c(상담, 치료, 보호 관계를 악용한 성적 학대)까지, 제176조(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에서 제180조까지, 제181조a 와 제182조의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68조 제1항).<sup>93)</sup></p>	

[표 III-7] 「독일 형법」 182조, 청소년 학대 (2013년 개정)

1항) 착취의 상황에서 학대 <sup>94)</sup> 1. 본인과 성적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와의 성적활동 중사를 감당하도록 하는 경우 2. 제3자와의 성적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제3자에 의해 몸에 가하는 성행위를 감당하도록 알선	피해자 : 18세 미만
	가해자 : 18세 이상
	5년 이하 징역 <sup>95)</sup>
2항) 금전적 대가로 18세 이상인 자가 자신과의 성적활동에 종사시킴으로써 18세 미만인 자를 학대하거나 이자의 몸으로 자신과의 성적활동을 감당하도록 유인	[1항]과 똑같은 처벌 적용
3항) 다음과 같이 학대한 경우 1. 성적 활동에 종사하게 함 2. 제3자와 성적 활동에 종사하게 하거나 또는 제3자에 의해 몸에 가하는 성행위를 감당하도록 알선	피해자 : 16세 미만
	가해자 : 21세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4항) 범행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나. 오스트리아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해 활동을 하는 국제단체인 엑팓 인터내셔널(ECPAT International)의 보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훌륭한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성적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 아동 섹스관광과 같은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도 매년 2만건 정도 발생한다고 한다.<sup>96)</sup>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국내외의 수요, 예

94) 2001년 형법182조에서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는 피해자 연령이 16세 미만이고 억압적인 강제 상황에서의 성적활동을 범죄로 보았다면, 2010년 개정된 형법의 182조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18세로 높였고, 형량도 강화하고 벌금형을 삭제했으며, 강제성의 유무와 상관 없이 착취적 상황에서의 성적 학대로 규정한다.

95) 2010년 개정으로 벌금형이 삭제되었다.

96) ECPAT International, *Executive Summary [Report]*, Austria, 2011 p.1

방조치 인식의 한계, 소비주의, 또래 압박(peer pressure), 아동 피해자 정보 수집의 어려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결여 등이 아동 성매매 또는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머물 곳을 찾는 가출 청소년들과 아동 성매매 유입의 관계도 보고되었다. 조사 대상인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동 성매매 문제에 국가 수준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듯하다. 엑팍보고서는 아동성매매에 대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해 종합적인 정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 (1) 오스트리아의 성매매 관련 정책

오스트리아는 등록된 성매매만 합법이다.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나 성매매 종사자가 자기 고용의 형태로 경찰당국에 합법적으로 등록 하였을 경우에만 처벌받지 않는다. 성매매 종사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고용하거나, 이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주에 따라 장소, 시간, 집창촌 구성 등 성매매 관련 규정이 다르나 대체로 성매매 밀집지역을 허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갖고 있다. 다만 최근 오스트리아 성매매 종사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간주된다.

오스트리아는 오랜 동안 성매매가 불법이었고 성매매 종사자와 포주는 모두 단속 대상이었으나, 세금과 국민 보건정책이 변화하면서 성매매에 대한 법규정도 바뀌어갔다. 1973년 성매매 단속이 차별이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시가 있었고, 1974년 형법개정으로 성매매는 합법으로 인정되었고 성매매 종사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성매매는 물론 성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포주 업무 역시 합법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포주 업무 인정으로 인해 국가가 성매매 종사자들의 착취를 국가가 인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고, 성매매 자체에 엄격한 접근법으로 반대 입법을 한 지방자치주도 나왔다.<sup>97)</sup> 이후 수차례의 형법 개정을 거쳐 2004년 개정된 오스트리아

형법에 의하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 역시 범죄행위로, 성매매를 알선할 경우 최대 징역 5년,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제하면 피해자의 성매매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종사자 여부와 상관없이 불문하고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지며, 만일 위 인신매매 행위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행해 졌다면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에 처한다.

[표 Ⅲ-8] 오스트리아 형법216조, 217조 (2016): 성매매 관련 범죄 내용

<p>제216조 성매매 알선</p>	<p>① 타인의 성매매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입을 취득려는 의도의 착취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② 협박이나 조건을 정한 착취, 다수의 성매매 종사자 착취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③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①과 ② 경우 6개월에서 5년의 징역                  ④ 협박에 의해 성매매 그만두지 못하도록 협박한 경우, 6개월에서 5년의 징역</p>
<p>제217조 국외지 성매매 거래</p>	<p>① 국적지가 아니거나 거처가 아닌 국가에서 성매매 알선한 경우, 6개월에서 5년의 징역. 단, 직업적으로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② 속여서 유인하거나 강압 또는 위협한 협박으로 성매매 종사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p>

2016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용의자 61명을 수사하였고, 16명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법정에서는 실형보다는 집행정지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sup>97)</sup> 법집행을 위한 교육과정에 인신매매 피해관련 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인신매매 수사와 기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며 인신매매 범죄조직을 적발하고 기소하기 위해 유럽 국가 정부들과도 협력한다.

97) 이은애 외(2006),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86쪽

98) USA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2017)* p.82

## (2) 아동 성매매에 대한 처벌

미성년자에게 성적 활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성적 학대’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한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며, 이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임신했을 경우 15년의 징역, 미성년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성매매는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위해 중개 또는 알선하면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한 성행위나 대가를 위한 성관계를 하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표 III-9] 오스트리아 미성년자 성매매 중개, 알선, 조장에 대한 처벌

제214조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 중개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① 미성년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경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성적 행위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개인적으로 가까이하도록 한 경우,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제215조 성매매알선	2년 이하의 징역
제215조a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및 음란물공연 조장	① 성매매 또는 포르노그래피적인 수행을 하도록 모집하거나 제공 중개한 경우, 6개월에서 5년의 징역.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거나 포르노그래피적인 수행에 연루된 미성년자를 이용한 경우도 처벌 ② ①의 행위를 범죄단체로서 범행하거나, 중한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하거나 범행을 통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게 하거나 범행의 결과로 타인의 특히 중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표 Ⅲ-10] 오스트리아 미성년자 성적 학대와 성 착취에 대한 처벌 내용

<p>제206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성년자와 성관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li> <li>② 미성년자가 자신 또는 제3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한 경우도 똑같이 처벌</li> <li>③ 위의 행위들로 인해 미성년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임신한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사망한 경우,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li> <li>④ 행위자의 나이가 형사미성년자보다 3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받지 않을 수 있다.</li> </ul>
<p>제207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206조의 경우 외에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경우,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li> <li>②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경우도 똑같은 처벌 가능</li> <li>③ 위의 행위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범행의 결과 미성년자가 사망하였다면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li> <li>④ 행위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의 나이보다 4세 미만이고 제3항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가 12세 미만인 때를 제외하고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li> </ul>
<p>제207조b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16세 미만의 자의 곤궁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에 대해 성행위를 하거나 스스로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li> <li>③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하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li> </ul>

### (3) 위험한 집단인 성매매 종사자들<sup>99)</sup>

오스트리아에서 성매매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성매매 자체는 비도덕적이며 성매매 종사자들은 ‘위험한 집단’들로 간주되어 왔다. 성매매 종사자들로 인해 에이즈와 성병이 발생한다는 생각에서 성매매로 인한 공공보건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고, 공동체 보호를 위해 성매매 업소를 격리시켰다. 지금도 비엔나는 학교, 청소년 센터, 놀이터, 병원, 교회, 역 등에서 150미터 이내에서의 길거리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성매매 업소는 불법이 아니나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성매매는 금지된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연방경찰의 성매매 관련 독립부서에 ‘성매매업’을 등록하고 거주이전에 대해서도 연방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성병확산 방지법(Sexual Transmitted Disease Law)」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성병유무를 확인받아야 하고 성매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고 항상 휴대해야 한다.

### (4) 성매매 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오스트리아 정부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2014 국가행동계획을 시행하면서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이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출판물 제작 및 배포와 홍보활동을 실시했고, 학교교육과 방송을 통한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내무부에서는 전화통화와 이메일로 24시간 운영하는 인신매매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와 군 당국에 아동성매매 방지를 위한 소책자 배포, 인신매매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 주관, 아동 섹스관광 예방을 위해 독일과 스위스와의 지속적인 협력도 모색한다. 그러나 상업적 성행위의 수요 자체를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99) 3)항의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2006) 88-89쪽을 참고하였다.

보고되었다. 대신 성매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하거나 성매매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식운동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sup>100)</sup>

## 다. 네덜란드

### (1) 네덜란드의 아동 성매매 현황

네덜란드는 EU, OECD, WTO 창립 회원국으로, 유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sup>101)</sup>) 세계 7위, 높은 GDP,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인권의 실천이 매우 높고, 부패 수준은 매우 낮은 유럽에서도 가장 근대화되고 산업화된 국가이다. 전통적으로 개인의 성적활동 통제에 진보적인 법을 유지해왔으며 성인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성노동을 인정하고 성구매가 합법인 나라이지만, 비자발적 성매매나 아동 성매매,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는 합법적인 성노동과 엄격히 구분하여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특히 아동 성매매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성착취로 간주하며 비자발적 성매매와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경우와 함께 ‘무관용 원칙’을 추구한다. ‘네덜란드에서 아동 성매매는 언제나 인신매매로 간주된다.’<sup>102)</sup>

그러나 2011년 엑팓 보고서와 2017년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카르브해 네덜란드 영토인 세 섬 Bonaire, St. Eustatius, Saba인 BES제도에서의 성매매와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문제가 심각해왔고 최근

100) USA Department of State,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pp.83

101) 유엔 개발 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평균 수명·교육 수준·1인당 GDP 등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 수준 지표

102)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Netherlands*,(2011) p.9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와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다.<sup>103)</sup> 법제도 상으로는 허가받은 성매매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경찰은 불법 성매매 단속에 집중하여<sup>104)</sup> 성매매 허가 환경 속에서 성매매를 안정적으로 규제하리라 기대되지만, 심각한 부정적인 부작용들이 많다. 감독과 규제를 피해 법이 허가하지 않은 정해진 주소지에서의 성매매 아닌 준불법적 상황에서 성매매를 조장하는 소위 ‘에스코트 서비스escort service’라 하여 ‘성매매의 회색영역’에서 벌어지는 성적 착취와 폭력은 대단히 위험하다. 미성년의 여성 청소년과 인신매매된 여성들의 착취는 주로 회색영역 성매매 시설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러버보이loverboy’라는 수려한 용모의 젊은 포주들이 아동·청소년 여성들을 유혹하여 성매매로 유인한다. 아동 성착취는 주로 호텔이나 주차된 차량, 개인 주거지, 불법 클럽 등 회색영역의 성매매 시설에서 발생한다. 포주들에 의해 아동·청소년은 흥등가의 길거리 성노동자로 착취당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아동 성매매는 범죄행위이며 경찰 검문이 엄격하다는 것을 포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sup>105)</sup> 네덜란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10세에서 14세의 아동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sup>106)</sup> 네덜란드 정부는 네덜란드 국민에 의한 해외 아동성매매관광도 심각한 아동 성착취 문제로 보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규제하고 처벌한다.

103)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Netherlands*, (2011) p.8. USA Department of State,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pp.283-285

104) 네덜란드는 안정적인 불법 성매매 단속과 처벌을 위해 성매매 담당 경찰과 사법부 판사들에게 성매매 교육을 받게 한다. USA Department of State,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pp.284

105)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Netherlands*, (2011) pp.9-10

106) ECPAT International, *Global Monitoring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Netherlands*, (2011), p.11

## (2) 네덜란드 형법의 성매매 착취 처벌

네덜란드에서 성매매를 제공하는 자가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성매매가 범죄로 간주된 적은 없었다. 2000년 성매매 개인뿐 아니라 성매매 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도 삭제함으로써 네덜란드는 성매매를 사회의 다른 노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개정은 자발적인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성매매 종사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안정시키고,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그 통제에 실효성을 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강요된 성매매, 미성년자의 성매매,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성매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성인, 이에 합의하여 금전을 지불하고 성구매를 하는 성인,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 종사자를 고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는 존재 하지 않으며, 다른 직업이나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법적인 보호와 세금납부의 의무를 갖게 되었다.<sup>107)</sup>

반면, 네덜란드 「형법」은 273f조 2항에 “착취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타인의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개인의 자유에 반하는 중범죄’ 범주에 두었다. 강압적이고 강요에 의한 성매매나 성매매 업소간의 성매매 종사자 매매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착취에 해당한다. 미성년에 대한 성매매 역시 불법이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최대 형량이 징역 12년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sup>108)</sup> 1명 이상 가해자 집단 또는 범죄단체에 의해 행해진 경우 형량은 징역 15년이며, 인신매매 범죄의 내용이 심각할 경우 중신형에 처할 수도 있다.<sup>109)</sup>

107) 한국법제연구원의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2006)

108)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강요하거나 착취하는 행위,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권유, 알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109) USA Department of State,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pp.283-284

### (3) 성매매 착취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성노동이 합법이지만 네덜란드 정부는 성매매와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 예방과 보호에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돌봄시설의 연결망을 확대하여 아동과 여성, 남성 피해자들에게 지역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쉼터 위탁과 같은 경찰의 즉각적인 지원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신매매 방지 담당 국가보고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디오나 웹사이트, 안내서, 학교예방교육과정 등 여러 형태로 인신매매 예방 공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성매매 영업소에 대한 검사도 한다. 또한 ‘익명의 범죄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상업적 성의 수요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아동섹스관광을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110)

#### 라. 소결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 성노동을 인정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대한 착취를 엄격히 단속하는 입법체도를 갖추고는 있으나 세 나라 모두 노동의 작업환경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네덜란드조차도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의 폭력이나 위압적 상황을 완벽히 규제하지 못한다. 독일은 결국 2017년 성구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보다 엄격히 단속하는 법으로 개정했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직업’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성매매 자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직업으로서의 성노동은 세 나라 모두 전국적인 합의를 얻지 못하고 일부 지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 가능했다. 특히 아동

110) USA Department of State,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p.284

의 성매매 유입에 특화된 예방책이나 보호 체계도 미비했다. 세 나라의 법이 모두 스웨덴이나 영국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모든 성적 행위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은 엄중하나, 성매매 피해자로서의 피해 상황이나 내용이 특화되지 못한 채 일반 아동보호 체계 안에 편입되어 제공되는 보호와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구닐라 에크베르그는 “독일과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접근하고 있는 성매매 합법화는 성차별과 성폭력의 가장 극심한 형태를 정상화(normalize)하는 것”<sup>111)</sup>이라 주장했다. 성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자체가 인신매매나 조직범죄, 폭력, 기망, 마약 거래 등 복합적인 범죄의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된 이상, 착취의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 매수 피해자를 아동 학대 피해자로 규정하되, 피해아동에게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그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 8. 일본

일본의 성매매 관련 대표적인 법률에는 「매춘방지법」, 「풍속영업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리고 「직업안정

111) Gunilla S. Ekberg, “Briefing – Swedish Law and Policies on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Human Beings” (2011), p2,  
<http://www.sccjr.ac.uk/wp-content/uploads/2012/11/Briefing-Law-and-policies-on-prostitution-and-THB-Sweden-1203082.pdf>

법」, 「노동자 파견법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등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sup>112)</sup>

1956년 제정되고, 2007년 6월 개정된 「매춘방지법」은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성매매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처벌하며, 대중에게 성매매를 광고하거나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매매에 얽힐 우려가 있는 여성이나 소녀(요보호 여성)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48년 제정된 「풍속영업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풍속영업규제법’)은 선량하고 청량한 풍속 환경을 유지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풍속영업 및 풍속 관련 영업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을 제한하고, 청소년이 이러한 영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함과 동시에 풍속영업의 건전화에 위하여 그 업무의 적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춘방지법」이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본은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에 언급된 처벌조항이 성을 파는 행위에만 한정되어 있고, 성을 구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이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성매매 문제를 특화시키기보다 일반여성들의 문제에 포함시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성을 ‘요보호여성’으로 간주하거나 「가족폭력방지법」과 같은 법에 의해 지원하는 체계 등에서 나타난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성교를 포함한 직접적인 성적서비스만이 금지 대상으로 되어 있어, 그 이외의 소프랜드<sup>113)</sup>, 딜리버리 헬스<sup>114)</sup> 등 다양한 유사

1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아시아-태평양 지역 성매매관련법정책 및 실태」, 47면

성적서비스는 「풍속영업규제법」에 의해 합법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성매매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sup>115)</sup> 따라서 「풍속영업규제법」은 실제적으로는 일정구역 내의 성매매를 인정, 허가하고 있어 「매춘금지법」과의 관계에서 상호모순적인 법률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일본에서 새로운 성관련 비즈니스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비즈니스는 모두 「풍속영업규제법」에 의한 규제만을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매춘방지법」이 있다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는 「풍속영업규제법」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합법화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116)</sup>

일본의 아동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은 위에서 언급한 전체 성매매 관련 법률 및 정책 안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는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제외하면 구강 및 항문 성교 등을 포함한 유사성행위 및 모든 성적 서비스는 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성매매 관련 정책은 성 매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기보다는 성 판매자를 단속하고 이들의 의식을 변화하려는 데에 주력을 둔 정책을 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매수 범죄 피해자에 특화된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성매매 문제에 대한 뚜렷한 문제의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

113) 소프랜드라고 불리는 증기탕은 접대원들이 고객들의 알몸을 씻어주고 접대를 해주는 퇴폐목욕탕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위키백과: 일본의 성매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84%B1%EB%A7%A4%EB%A7%A4](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84%B1%EB%A7%A4%EB%A7%A4)

114) 방문 마사지 형태의 성서비스 제공

115) 일본에서 성매매의 정의는 성교(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의 삽입)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강성교와 항문성교 등의 행위는 합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위키백과: 일본의 성매매.

[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84%B1%EB%A7%A4%EB%A7%A4](https://ko.wikipedia.org/wiki/%EC%9D%BC%EB%B3%B8%EC%9D%98_%EC%84%B1%EB%A7%A4%EB%A7%A4)

1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위의 글, 47-51면 참조

다. 이러한 문제는 아래에서 설명할 아동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및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가. 일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1)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① 1999년 제정, 2014년<sup>117)</sup> 개정
- ② 목적: 유니세프의 건의에 따라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아동매춘과 아동포르노를 처벌함
- ③ 개념정의: 아동매춘이란 아동(18세 미만의 자), 아동에 대한 성교 등을 알선하는 자, 아동의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자의 후견인 및 그 외 사람으로 아동을 실제로 감호하는 자를 이룸), 혹은 아동을 그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에게 대가를 공여하고 성교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 등(성기, 항문, 혹은 유두를 이룸)을 만지거나, 아동에게 자기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함(제2조 제1항 및 제2항)<sup>118)</sup>

(2)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이성소개사업규제법)」

- ① 2004년 제정, 2008년 개정

117) 인용한 원 자료에는 2004년으로 기록돼 있었으나, 일본의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2014년으로 정정요청하여 2014년으로 정정함.

118)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위의 글, 49면

② 목적: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하는 행위금지 및 아동에 의한 이성소개사업 이용 방지조치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③ 제정 배경 및 기본개념

2001년 일본정부에서는 인터넷 상의 ‘만남사이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새로운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경찰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만남사이트관련 청소년 성매매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청에 ‘소년유해환경대책연구회’를 설립하여 법적 규제방법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합하여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책무(제3-5), 규제내용(제6-10조), 벌칙(제11조 이하) 등으로 구성되어있다.<sup>119)</sup>

#### 나. 일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현재 일본에서는 삽입성교를 제외한 모든 성적 행위가 사실상 매매 가능한 상태이다.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는 범죄조직인 야쿠자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이용되고 있다. 한편, 성매매는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다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상담 혹은 보호체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1)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

- 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인보호시설 운영과 지원시스템
- ② 외국인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119)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위의 글, 49-50면

- ③ 기타 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업
  - 매춘방지법 제정의 날 행사: 성매매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 상담원 교육 및 성매매 강의지원
- ④ 성매매 피해여성 및 여성폭력관련시설의 종류

[표 III-11] 일본 성매매 피해여성 및 여성폭력관련시설의 종류

구분	내용
부인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인보호시설은 요보호여성을 수용, 보호하기 위하여 도도부현에 설치할 수 있음(법 제36조)</li> <li>· 요보호여성의 가정생활지도, 직업훈련, 수산(실업자, 저소득자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는 것), 취직 등을 지원하는 시설</li> <li>· 성판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위한 공적인 보호지원에 관해서 매춘방지법 제4장 보호갱생에서 명시</li> <li>·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비 및 운영비를 비롯한 상담원 고용비 등의 반액을 부담하며, 예산 범위의 2/3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음</li> <li>· 매춘방지법 제39조에 의거 정부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부인보호시설, 설비에 필요한 3/4를 보조하도록 명시</li> <li>· 현재 성판매 여성(요보호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체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정폭력 피해여성, 빈곤여성 등 다른 여성문제와 혼재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li> </ul>
부인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인상담소는 성행 또는 환경에 비추어 매춘을 행할 우려가 있는 여성(요보호여성 이라 함)에 관해서 보호갱생을 꾀할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짐</li> <li>· 매춘방지법은 이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보호갱생의 관계로서 도도부현에 「부인상담소」를 설치(법 제34조 1항)</li> <li>· 부인상담소 업무 ① 요보호여성에 관한 각반의 문제에 있어 상담에 응할 것 ② 요보호여성 및 그 가정에 있어 필요한 조사 및 의학적, 심리적, 직능적 판정을 행하고 또한 이것들에 부수하여 필요한 지도를 행할 것 ③ 요보호 여성의 일시적인 보호를 행할</li> </ul>

구분	내용
	<p>것. 이러한 일시적인 보호를 위하여 부인상담소에 요보호 여성의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34조 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피해자의 원조가 가능한 기관임</li> <li>· 원래 매춘과 관련된 여성의 상담과 지원, 임시 보호를 담당한 기관이었지만 차츰 배우자간의 폭력에 관한 업무도 담당</li> </ul>
부인상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도부현의 지사는 요보호여성의 보호갱생을 꾀하기 위해서 ‘부인상담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됨(법 제35조)</li> <li>· 부인상담원은 비상근, 그 직무는 요보호여성의 발견, 생활문제, 직업문제, 건강문제, 부인보호시설에의 입소문제, 가정 또 다른 타 환경의 문제에 대해 상담에 응하고, 관계시설에의 알선 그 밖의 필요한 지도를 행함</li> <li>· 매춘방지법 제5조 위반여성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보내고 거기서 처우가 결정 검찰청에는 갱생보호상담실이 있는데 여기서 부인상담소나 부인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음</li> <li>· 기소되면 재판을 거치고 실형이 선고되면 교도소로, 보도처분이 내려지면 부인보도원으로 가게됨</li> </ul>
외국인을 위한 인권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성 산하의 기관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를 위해 설치</li> <li>· 활동은 인권 상담 및 인권 침해사건의 조사 처리 등이며 인권 상담소의 설치 장소는 도쿄, 오사카, 고베, 나고야, 히로시마, 후쿠오카, 다카마쓰, 마쓰야마 등</li> </ul>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sup>120)</sup>

일본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가 보도(補導)<sup>121)</sup>되거나

120) 이 장은 2017년 9월 십대여성인권센터를 기관방문한 일본의 고독·곤궁에 처한 소녀를 돕는 ‘Colabo’라는 단체의 ‘니토 유메노’ 대표와 ‘희망씨앗기금’의 ‘양징자’ 대표이사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이메일로 질문하였고, ‘양징자’ 대표이사가 보내온 답변이다.

121) 보도(補導)란 ‘비행(非行)’을 범하거나 또는 비행을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

스스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 피해자는 아동상담소의 일시보호소에 수용된다. 이때, 성 매수 범죄 피해 소년은 비행 소년으로 간주되어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상담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시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에 설치된 의무화되어 있는 기관으로, 아동 복지에 관한 상담, 지원을 행하는 행정기관이다. 아동상담소장이나 시도부현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아동을 최장 2개월 이내 일시보호소에 입소하게 한다. 일시보호소에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때문에 긴급하게 아동을 가정에서 떼어낼 필요가 있는 경우의 ‘보호’ 대상과, ‘비행’으로 간주된 아동이 함께 입소하게 되는데, 성매수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비행’ 아동으로 취급된다.

일시보호소를 나간 후, 보호대상 아동들은 가정위탁(里親), 아동양호시설(兒童養護施設), 자립지원홈, 또는 민간쉼터 등에 보호 위탁되는 경우가 많지만, 성 매수 범죄 피해자들은 단속 대상이 되어 감별소에 송치된 후 보호관찰 처분이 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 소년원에 송치되면 아동상담소와의 관계는 끊어진다.

한편, 성매수 범죄 피해자들은 아동자립지원시설(兒童自立支援施設)에 입소조치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아동복지법」 44조에 따라 불량행위를 행한 아동, 가족환경 기타 환경 상의 이유에 의해 생활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보호’시설이라기보다 경미한 소년원에 해당한다.

### (3) 2015년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권고 및 2016년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권고사항

드 브키치오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을 조기 발견하여 비행화의 정도가 진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일본대백과전서)

은 2015년 일본에 공식 방문하여 일본의 미성년자 성 상품화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많은 수의 여성 아동이 원조교제를 경험하는 문제, 아동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히고 외설 사진 또는 영상을 찍도록 하는 사업 등을 지적하며 아동의 성 상품화에 대한 사법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권고하였다. 또한 경찰이 아동에 대한 성 착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권고하였으며, 일본 사회에서 성 착취를 사회가 용인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sup>122)</sup>

한편, 2016년에 발간된 미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일본을 강제노동과 성매매에 종속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리고 성매매에 종속된 아동에 대한 목적지이자 근원지이며 경유지인 국가로 분류하였다. 이어 외국인과 어린 여성들이 성매매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대해 ‘일본 시민권자 중에서도 특히 가출십대청소년들이나 외국인 어머니인 아동 시민권자들도 성매매당하기 쉽다. “원조교제”나 이의 변형인 “JK(여고생을 뜻함) 비즈니스”<sup>123)</sup> 같은 현상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유발한다. 정교하게 조직화된 성매매 조직이 지하철이나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거리와 같은 공공장소와 온라인 상에서 취약한 일본 여성과 소녀들을 - 대개는 빈곤하거나 정신장애를 지닌 이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여성들은 쉽게 인신매매 피해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본 남성들은 계속해서 아시아 아동 섹스관광 수요의 주요 원천이라고도 적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법 상의 정의에 부합하는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122) 유엔 특별보고관 “일, 여고생 접대 서비스 ‘JK 비즈니스’ 멈추라” (조선일보, 2016. 3. 9. 최원우 기자)

123) 여고생 이미지를 이용해 남성에게 친밀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니토 유메노(2017), “JK비즈니스와 소녀들의 현실”,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매개되는 욕망, 거래되는 몸, 한국과 일본의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실태」 2017년 9월 23일 심포지움 자료집에서 재인용.

완전히 범죄화하도록 법제를 쇄신할 것을 권고하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강제노동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개인을 채용, 이동시키거나 접수하는 이들의 범죄화: 징역형을 대신하는 벌금형 삭제에 의한 인신매매 범죄 형량 증가: 노동 인신매매 사건 구속 수사 노력 확대: 선고받은 인신매매업자의 징역형 처벌: 과잉 보증금 금지 집행 확대: 일선 경찰들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확인 절차 신설 확대 시행 등이 있다.

1947년 아동 성매매를 포함하여 아동에 유해한 행위를 유발하는 행동을 범죄화하는 법으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이 모든 형태의 아동 성매매를 다루지 못하는 듯 하며, 성매매 목적의 아동 고용, 이동, 접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24)</sup>

#### (4) 일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활동가 평가<sup>125)</sup>

##### 가)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사의 문제점

평일 8시 반~17시까지만 문을 열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에 아동·청소년이 보호를 요청해도 그날 중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방과후에 상담하고자 해도 상담을 받을 수 없다.

아동상담소에서는 사무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이 아동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성매수 피해를 당하거나 성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복잡한 트라우마에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 짓을 하나”, “문제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수 없다” 등의 발언으로 오히

124) 미합중국 국무부, <https://www.state.gov>

125) 이 장 역시 각 주 6)과 같은 방식으로 이메일로 질문하고, ‘양징자’ 대표이사에게 받은 답변이다.

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시 상처를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 일시보호소의 문제점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 학습권 침해 (의무교육연령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
- 외부교통권 침해(친구, 지인, 지원자, 교사, 변호사 등에 대한 연락, 면회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 과도한 자유 제한 (사담 금지 등)
- 위반에 대한 ‘반성 생활’(사실상의 구속, 체벌 등)

다. 소결

일본은 현행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입법례와 가장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다.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은 보호라는 형태로 아동상담소의 일시보호소에 ‘비행’청소년으로 간주되어 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되며, 퇴소 후에는 단속 대상이 되어 감별소에 송치된 후 보호관찰 처분이 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일본의 미성년자 성 상품화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명하였고, 일본 사회에서 성착취를 사회가 용인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역시 외국인과 어린 여성들이 성매매에 빠지기 쉬운 상황에 대해 ‘일본 시민권자 중에서도 특히 가출 십대 청소년들이나 외국인 어머니를 둔 시민권자 아동들이 성매매당하기 쉬우며, “원조교제”나 이의 변형인 “JK 비즈니스” 같은 현상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유발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아동복지법」이 모든 형태의 아동 성매매를 다루지 못하며, 성매매 목적의

아동 고용, 이동, 접수를 규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 조치로 일본 도쿄도는 지난 2017년 7월, JK 비즈니스를 금지하는 조례인 「특정 이성接客 영업의 규제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조례 역시 영업을 신고제로 하고, 영업의 규제보다는 소녀에 대한 훈육 지도에만 힘을 쏟고, 종업원 명부를 경찰이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녀들을 단속하고 18세 미만 고용을 금지할 뿐 사실상 JK 비즈니스는 합법화의 모양새가 되어 있다.<sup>126)</sup>

“JK 비즈니스 문제의 본질은 실제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피해를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UN 특별보고관과 미국 국무부가 작성한 인신매매에 관련한 보고서를 보면 JK 비즈니스는 일본의 인신매매라고 지적하고 있다. 빈곤이나 학대로 고립되거나 속아 넘어간 소녀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척하는 어른들에게 붙잡히고, 피해자 착취와 폭력 구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고생을 ‘JK’라는 기호로 성적으로 가치가 높은 것으로써 브랜드화 상품화해서 소비하는 사회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으면 현재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sup>127)</sup>이라고 주장하는 니토 유메노의 발언은 성매매 범죄를

126) 도쿄도가 공개한 ‘JK비즈니스 알람사이트’에서는 여고생에게 인기가 있는 여성 모델을 기용해, ‘JK비즈니스는 빠지면 위험한 늪’, ‘진짜 위험해. 이 아르바이트는 절대 하면 안돼’라고 써있다. 사고 파는 어른들을 향해 ‘팔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라고 하지 않고, 소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구매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소녀에 대한 보호,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교육 등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니토 유메노(2017), “JK비즈니스와 소녀들의 현실”,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매개되는 욕망, 거래되는 몸, 한국과 일본의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실태」 2017년 9월 23일 심포지움 자료집.

127) 니토 유메노(2017), “JK비즈니스와 소녀들의 현실”,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매개되는 욕망, 거래되는 몸, 한국과 일본의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실태」 2017년 9월 23일 심포지움 자료집.

아동이 일으키는 범죄라는 관점이 아닌, 아동은 성인에 의해 성 매수 범죄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 IV.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입법과제 및 정책제언

### 1. 성매매에서 성착취로의 입법 및 정책 변화

#### 가. 국제조약 및 권고

「유엔아동권리협약」 34조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를 ‘착취 목적으로 위협, 무력의 행사 또는 기타 형태의 강박·납치·사기·기만, 권력의 남용 또는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 또는 혜택의 제공 또는 접수 등의 수단에 의한 인신의 채용, 이송, 운송, 은닉, 인수를 의미한다. 착취는 최소한 타인의 성매매 또는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노동 또는 서비스, 노예제도 또는 노예제도와 유사한 관행, 예속과 장기 적출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유엔 가입국이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f) 국가 법은 성범죄 및 성착취의 아동 피해자가 범죄자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아동은 성 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나. 해외 입법례

##### (1) 성착취로 보고 있는 해외 입법례

앞서 살펴본 입법례에서 미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삼아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히 ‘성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아동을 가정법원의 보호를 받아야 할 착취 피해 아동으로 인식한 뉴욕 주의 「착취 아동을 위한 면책법(The Safe Harbor for Exploited Children Act)」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 성매매와 관련하여 영국 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법 전체에서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ution)’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영국 정부와 의회는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는 해당 아동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라는 관점에서 2000년대 초부터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아동 착취(child exploitation)’로 교체하여 왔다. 이에 영국에서는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아동학대 피해자로 간주, 일반 학대 피해자와 같은 아동보호체계에 편입하여 보호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아동이 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이러한 아동들을 부모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해 성매매 행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 성적으로 학대, 착취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는 성착취 아동 보호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피해 아동이 발견 즉시 적절한 보호를 포함한 지역 차원에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아동과의 성적 관계는 아동 성착취 범죄로 다루고 있다. 아동 성매매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성착취로 간주하며 비자발적 성매매와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의 경우와 함께 ‘무관용원칙’을 추구한다. ‘네덜란드에서 아동 성매매는 언제나 인신매매로 간주된다.’

## (2) 인신매매 개념을 적용하는 해외 입법례

미국에서는 성 착취의 목적으로 아동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팔레르모 의정서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 왔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법원은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아동 성 매수 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범행과 관련된 재산은 정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아동 성매매가 해당 아동의 모집, 이송, 수용, 숨김 등의 행위와 연결되는 경우는 아동의 인신매매 행위로 포섭되어 가중처벌되는데, 이 때 아동 성착취 행위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이 되어, 만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동의의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는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해자를 처벌한다.

2017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인신매매의 정의를 협소하게 보아 실제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낮은 형량을 부과하는 점, 대한민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피해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 성 착취가 직접적으로 인신매매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다. 성착취로의 전환

위와 같은 국제조약의 취지와 해외입법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행위는 성착취 범죄일 뿐이라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도 용어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매매’라는 단어는 매도와 매수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인을 유인

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내포할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새로운 법률 조항들이 만들어지면서, 먼저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sup>128)</sup> 영국 역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는 실제로 성을 착취당한 학대 피해 아동을 모욕하는 용어이며, 가해자(성 구매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용어를 모두 수정하여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은 실제로는 성적으로 착취된 아동이며, 학대 피해 아동임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우리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의 인식 전환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받아들이고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용어를 성착취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2. 대상아동·청소년 조항 삭제

### 가. 대상아동·청소년 개념 삭제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대상이 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은 「소년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처럼 취급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규정의 입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128) 이유진 외(2013), 위의 글, 136면.

구제를 하려던 것이었지만, 사실상 보호처분의 성격은 국가에 의한 강제처분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아청법’에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성인 성매매자와는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어서, 이를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아청법’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동·청소년 보호 취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이분화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앞서서도 계속 살펴보았던 우리나라가 이미 채택하고 사인한 많은 국제조약들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던 ‘성착취에 희생된 아동·청소년이 가해자가 착취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범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법적으로 희생자의 신분이며 이에 따라 대해짐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 권고에도 위배되고 있다.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중대한 성착취이자 폭력이며 학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에게 행정적으로나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은 여전히 비난의 화살과 책임이 아동·청소년에게 있다는 잘못된 편견을 낳을 수 있고, 성매매에 대한 수요인 성구매를 차단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 국회의장에게 ‘성매매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sup>129)</sup>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나이, 육체적

129) 국가인권위원회, 2017.8.1,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boardtypeid=24&boardid=7601443>

힘,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아동·청소년에 비해 성인이 우위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이 쉽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불법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라고 아동을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성적 학대와 착취’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많은 국가에서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는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법률은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처벌’로 인식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우며, 성구매자나 알선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여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명한 현행 규정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해 이들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보면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원화된 청구와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나. 피해아동·청소년으로의 통합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피해자’와 ‘대상자’로 구분하는 것은 위와 같이 법체계적으로도 모순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사

가 있는 자발적 아동·청소년과 성매매의사가 없는 아동·청소년을 나누어 놓고, 성매매 의사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분지우고 그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자 한 정책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연관된 모든 경우는 미성숙한 발달단계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는 자발·비자발이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성인 성매매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정책이 집행되기 때문에 일선에서 성매매단속과정에서 미성년판매자가 인지될 경우 성인 성매매정책에서처럼 자발·비자발에 초점을 두어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보아 보통 보호처분을 받도록 법원송치의 견을 낸다고 한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피해자로 볼 수 있음에도 ‘아청법’에 의해 불합리하게 처리 되는 것이다.<sup>130)</sup>

미국의 최근 판례에 의하면, 미국 법원은 아동이 성을 팔 것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아동이 돈을 받기 위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는 성인인 가해자에게 이용되고 통제된 결과라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에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아동 성 착취 가해자의 처벌에 있어 아동의 행위 및 대가의 지불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모든 가해자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적인 행위를 한 성인과 동일하게 아동의 성을 착취한 자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서의 피보호자가 아니라 ‘피해지원의 대상’으로서 보호받아야 피해자로 보고 앞서 본바와 같이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자발성’ 여부를 떠나서 ‘성착취’의 개념으로 본다면, 대상아동·청소년의 개념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130) 강지명(2013),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175면.

### 다. 보호처분 조항 삭제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야 한다.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한다면 그들은 제재의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자 보호의 대상이다. 그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은 소년법의 보호처분의 종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지원 기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으로 처벌하는 인상을 주게 되어 성인 성구매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성인 성매매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는 시설의 입소나 시설에서의 수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는 그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인권피해자가 될 수 있다.<sup>131)</sup>

성매매에 관련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성매매에 관련된 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으로 간주하고, 단속과 보호관찰의 대상이 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서는 “원조교제”나 이의 변형인 여고생 이미지를 이용해 남성들에게 친밀한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JK 비즈니스”같은 현상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성인 성매매수자 단속과 처벌보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화·교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막아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이는 결국, 2017년 JK 비즈니스를 사실상 합법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볼 수 있다.

131) 강지명(2013), 위의 글, 168면.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아동안전법」을 제정하면서,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을 추가적으로 구금한다면 또 다른 트라우마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거나 형사 절차와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가해자로부터의 협박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사만을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현재 미국의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메사추세츠 등의 주에서는 착취당한 아동을 위한 면책법이라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다른 주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법을 제개정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고 보호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개념과 보호와 지원의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앞으로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에서도 피해자 중심적인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3.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강력 처벌

가. 「아동복지법」 적용을 통한 성적 아동학대 처벌 확대

캐나다에서는 성매매에 아동이 연루되는 경우에는 성적으로 학대, 착취당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아동 성매매와 관련된 영국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전체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가 ‘아동 착취’로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역시 성 매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성 학대의 피해자이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왔으며, 각 주 역시 이러한 입장에서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왔다. 오스트리아도 미성년자에게 성적 활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성적 학대’로 법적으로 엄격히 금한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하며, 이 행위로 인해 미성년자에 상해를 입히거나 임신했을 경우 15년의 징역, 미성년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의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 형법은 13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처벌된다. 그런데 아동이 13세를 넘긴 경우 최근 판결에서는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성적인 아동학대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을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B군이 육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채 B군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욕구를 충족하는데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견해 나가며 공동체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로, 육체적 성숙도는 18세 차이나는 교육자와 아동 사이의 성관계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sup>132)</sup>

132) 법률신문 (2017-08-14), 인천지방법원 2016노3342사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0325>, “자신이 가르치던 13세 중학생 제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성 학원강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시내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권모(33)씨는 2015년 9월 학원에 다니던 A(당시 13세)군에게 출석이나 숙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친분을 쌓았다. 권씨는 A군에게 지속적으로 ‘만나보자’, ‘안아보자’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권씨는 ‘집으로 놀러오라’는 말에 자신의 오피스텔로 찾아온 B군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네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A군의 어머니가 권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권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8월 “피해자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음에도 초기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sup>133)</sup> 아동·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성적인 아동학대로 보는 것처럼, 아동을 성매매한 경우는 더욱 심각한 성적 학대이자 성착취로 법과 판례가 바라 보아야 한다.

#### 나. 어플리케이션 규제 강화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유엔 가입국이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b)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요를 특별하게 다루는 법 체계를 마련할 것, (d)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하여 알선업자, 소개업자, 조력자 뿐 아니라 재정,

터 성적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결국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권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시간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에 반발해 “B군이 만 13세의 소년이기는 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도리어 법정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133) 대법원 2017. 6. 15.선고, 2017도3448판결

기술을 담당하는 자까지 공급 과정에 있는 모든 단계의 기관에 대한 기소 및 유죄 판결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k) 아동 성착취의 수요에 대한 모든 단계를 조사할 것 - 즉, 직접적인 관계자 뿐 아니라 중개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관계자 모두를 조사하며, 이러한 조사를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포괄적 전략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 3,4차 국가보고서의 심의 결과, “어떠한 수단에 의한 성 착취를 위하여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의 성 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최근 한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이 처음 성매매를 한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카페/채팅’ 27.2%였다.<sup>134)</sup> 이처럼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10대를 유혹하는 어플까지 생겨나고 있고, 아동·청소년들 상당수가 노출돼 있는 스마트폰 채팅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조건만남을 아동·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창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으나 사실상 알선조직에 의해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선되고 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이 수단이 되어 아동을 유인하는 이러한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플 개발자,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어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세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화하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처벌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134) 자세한 내용은 정현미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참조.

#### 다. 성매수 유인·권유에 대한 적극적 처벌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청법’ 제13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법령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기법이나 후속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이 법령은 그저 문구로 존재할 뿐이다.

영국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범죄의 예방이라는 점에서 ‘그루밍’이라는 개념을 법에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 산하에 아동 성착취와 온라인 보호팀을 별도로 두어 온라인 상의 성 착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해당 팀은 경찰청 뿐 아니라 국가범죄수사국과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로 유인된 아동·청소년을 관찰하면서, 성매수를 제안, 성매매를 유인, 권유한 성매수자를 체포한 경우를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다. 현재 기소까지 연결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와 같이 새로운 수사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기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성착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적극적 몰수

미국의 경우 인신매매의 처벌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점은, 아동의 성착취가 인신매매에 해당함이 증명된다면 법원이 인신매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법적 배상(mandatory restitution)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인신매매 범행과 관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이나, 그 범행을 조장하는 데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부동산 등의 모든 재산은 정부가 몰수하도록 하였다.<sup>135)</sup> 그리고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유엔 가입국이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e) 성착취로부터 발생한 모든 수익과 자산은 피해자를 위한 보상 정책 등 치료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압류하고 몰수할 것이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현행 성매매처벌법 제25조(몰수 및 추징)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 등 범죄 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되고도 재영업에 나서는 퇴폐업소를 뿌리뽑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도입, 부당이득 수익원을 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 즉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업주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성매매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고 나서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부당이득을 빼돌려 재영업에 나서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성매매 업소 단속은 2013년 2천350건, 2014년 2천195건, 지난해 2천296건 등으로 해마다 2천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인원도 같은 기간 5천57명, 4천646명, 4천467명 등 5천여명에 이른다. 신·변종 퇴폐업소의 등장 및 솜방망이 처벌 탓에 재영업에 나서는 업주가 많아 매년 지속적 단속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단속에 그치

135) 김중철, 최민영(2012),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62면.

지 않고, ‘기소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sup>136)</sup>

그러나 단속 건수에 비해 실제 몰수액이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단속·처벌된 이후에도 성매매 업소 운영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 몰수·추징 방안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특히 조직적인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수단이 되어 아동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현재의 상황을 성매매 알선행위로 보고 어플 개발자, 운영자 및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세서 자체를 수사 과정에 포함시켜 이들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여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금 또한 압수, 추징되어야 한다. 또한 건물이나 시설등의 임대인이 성매매 알선사범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이나 건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몰수·추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마.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의 확대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의 유엔 가입국이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b)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요를 특별하게 다루는 법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아청법’ 제49조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136) 연합뉴스(2016.01.10.일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8/0200000000AKR20160108151900061.HTML>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1호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자도 공개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동 성착취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매수’ 범죄 역시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sup>137)</sup>

#### 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간음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13년 성매매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및 집행’이 필요한가와 관련한 한 연구를 보면 ‘전혀 아니다’(4.0%), ‘조금 아니다’(2.8%), ‘보통이다’(16.7%), ‘조금 그렇다’(27.5%), ‘매우 그렇다’(49.0%)이었다. ‘조금 그렇다’(27.5%)와 ‘매우 그렇다’(49.0%)를 합하여 7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매우 그렇다’의 경우는 성매매피해여성쉼터가 65.0%로 가장 높았고, 경찰이 31.3%로 가장 낮았다.<sup>138)</sup>

137) 현재 이와 관련된 개정안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2. 13. 현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하고 있다(안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3년간 총 지급건수가 11건에 그쳐 성매매 예방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국회여성가족위원회)이 2016년 10월 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성매매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된 성매매 신고건수는 2014년 522건, 2015년 387건, 2016년 8월 329건에 달하였으나,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014년 6건, 2015년 2건, 2016년 3건에 그쳤다. 이처럼 포상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와 지급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매년 책정된 3천만 원의 예산 중, 2014년 6건 510만원(17%), 2015년 2건 2백만원(6%), 2016년 8월까지 3건 210만원(7%)의 포상금이 집행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신고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할 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피의자가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유사한 포상금 제도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는 공정선거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5억원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추가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매매신고포상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의 운영방식처럼 성매매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기소 또는 기소유예가 확정되면 추가 보상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sup>139)</sup>

138) 자세한 내용은 정현미 외(2016) 위 보고서, 177면 참조.

139) 국민일보, “성매매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 3년간 11건 지급”, (2016. 10. 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970155&code=611111111&cp=nv>.

#### 4.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와 교육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유엔 가입국이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h) 범죄자의 효과적인 구금, 조사, 기소 및 제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교육 전문가, 법 집행 담당자, 판사까지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 훈련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1989년 채택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영국에서 아동 학대는 중앙정부와 지역 사회가 모두 관여하여야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영국의 중앙정부는 아동의 모든 상황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협업할 것을 강조한다. 중앙정부는 통합적 관점에 근거하여 아동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정부 지침<sup>140)</sup>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아동의 필요에 의해 담당자와 담당 부처들은 공통된 관점으로 공통된 용어를 사용하여 부처별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미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국무부, 국토안보부,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의 해당 관계자들이 아동 성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피해자로 판단되는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 및 지방 공무원에게도 피해자 파악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40) 지침의 법적 근거: 지방정부사회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 1970) 제7조에 의해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활동가들을 양성해야 하고, 활동가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교사, 의료진, 법률단, 자원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이나 지원관련 구체적인 업무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를 위한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개입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아동에 특성화된 보호 시스템 마련

### 가.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통합 지원 시스템 확충

아동·청소년성매매는 노동, 성, 교육, 직업, 심리, 가족, 주거,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문제다.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경험은 다른 위기청소년들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특수하다. 위기청소년 전체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에 유입된 십대 여성들은 양적으로는 소수일 지라도 질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이다. 또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해당하는 법도 다를 뿐 아니라 성인과 십대의 특성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성인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각각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명의 활동가가 성격이 매우 다른 두 영역의 전문성을 모두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은 ‘발견,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상담, 자활’이라는 일련의 과정(continuum of care)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피해 청소년 쉼터가 매우 적으며 그마저

서울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질적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서 제안한대로 ‘대상청소년’ 개념이 삭제되면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로써, 재미있고 즐겁고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정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업 능력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들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수업이 거의 1:1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력 취득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자립학교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 채널 또한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전문 상담소를 중심으로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상담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소뿐 아니라 모든 서비스 단계에서 지속적인 상담이 필수적이다.<sup>141)</sup>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현실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성매매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시설과 단체가 매우 소수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통합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아동·청소년의 체계 접근권 확보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은 유엔 가입국이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141) 2016. 7. 21. 열렸던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워크숍에서 김고연주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모델(가)”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글에서 요약하면서 몇가지 단어와 관점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성인과의 큰 차이점은 첫째, 십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성인 성매매는 주로 업소형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주로 개인형이라는 점이다. 셋째, 십대들은 성장 시기에 따른 특수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g) 포괄적이고 적절한 아동보호 시스템에 의하여 아동이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는 아동에 특성화된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m) 소송 등 법적 절차에 있어 아동 피해자를 참여시키고 아동 피해자가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또한, 아동이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체계를 마련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근절 전담 기구 마련

아동·청소년 성매수 방지 대책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근절할 수 있는 특화된 기구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특징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매체가 80% 이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피해를 인식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상담소나 지원시설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점,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의 문제가 가정폭력, 성폭력, 빈곤 등의 다양한 문제들에 원인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결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독립적인 정부 부처가 신설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분리되어있는 각각의 부서가 따로따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서는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계획을 세우기는 무리하다고 보여진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매체 환경에 범람하는 불법·유해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나 처벌, 단속, 예방, 교육, 피해

자 보호 등을 다룰 수 있는 범정부적 기구(민간 전문가를 포함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현재 정부차원의 성매매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도 차단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수사처벌 강화 등 모든 방면에서 현장의 법 집행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sup>142)</sup> 하지만 현재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성인 중심의 성매매 방지대책 안에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을 특화시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근절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도와 조치를 마련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매수 근절 전담 기구 마련을 위해 현행 여가부에서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방지추진점검단과의 관계성과 연관성에 대해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 6. 범죄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 설치

영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죄가 발생하고 난 후 사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범죄의 예방이라는 점에서 영국 국회의 내무위원회(Home Affairs Committee)는 ‘그루밍(grooming)’이라는 개념을 법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sup>143)</sup> 그루밍이란 성인이 아동 성매수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아동을 길들이는 행위로,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 접근

142)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553>

143) Home Affairs Committee (2013) *Second Report: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the response to localised grooming*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현재, 영국에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아동 성착취와 온라인보호팀(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에서 아동의 성적 이미지를 분석하는 팀이 있어, 이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알게 되면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에 알리고, 아동 음란물 소지자를 체포하고 있다.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경찰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명확한 아동 성 착취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동기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sup>144)</sup> 또한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의 유엔 가입국이 아동 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j) 잠재적 범죄를 타겟으로 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확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청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13조제2항) 그러나 이러한 유인, 권유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성매수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영국의 경찰청이 운영하는 아동 성착취와 온라인보호팀처럼 아동·청소년 성매수를 감시할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144) 조진경 외(2017),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회 입법조사처 토론회 자료. 69면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은영 외(2010), 『국내외 아동성폭력범죄 특성분석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 강지명(2013),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2004),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에 관한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공약 이행 점검회의 참가 보고서
- 김민경(2017), 「성매매 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관련 2017년 상반기 국외 동향」, 『여성과 인권』 1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김종철, 최민영 (2012)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 니토 유메노(2017), “JK비즈니스와 소녀들의 현실”,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매개되는 욕망, 거래되는 몸, 한국과 일본의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실태」 2017년 9월 23일 심포지엄 자료집
-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대한민국 정부)
- 안창혜(2017), 「성매매 ‘합법화’와 ‘비범죄화’ 논의 재고: 독일과 뉴질랜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권
- 이유진 외(20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애, 김재광(2006),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정현미 외(2016),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조윤오(2012), 「영국 경찰의 소년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31호,
- 조진경(2017),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매개되는 욕망, 거래되는 몸, 한국과 일본의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실태』, 2017년 9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자료집
- 조진경 외(2017)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토론회 자료
- 정재원(2012)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성구매 수요에 대한 억제 방안」
- 채혜원(2017. 8. 9) 「독일, 7월부터 ‘성매매 종사자 보호법’ 시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웹사이트
-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3), 『유럽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실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_\_\_\_\_ (2012),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성매매 관련 법정책 및 실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해외문헌>

문헌자료

Alexis Jay OBE, “Independent Inquiry into Child Sexual Exploited in Rotherham.” (2014)

[https://www.rotherham.gov.uk/download/downloads/id/1407/independent\\_inquiry\\_cse\\_in\\_rotherham.pdf](https://www.rotherham.gov.uk/download/downloads/id/1407/independent_inquiry_cse_in_rotherham.pdf).

Coffey, Ann MP (연설문), “Banishing the term ‘child prostitute’”, Second Reading of the Serious Crime Bill, 5 January 2015

- Council of Europe,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https://www.coe.int/en/web/anti-human-trafficking/about-the-convention>
-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15),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 Department of Health (2000), “Safeguarding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Supplementary Guidance to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 ECPAT International, *Executive Summary [Report]*, Austria, 2011
- \_\_\_\_\_, *Global Monitoring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Netherlands*, 2011
- \_\_\_\_\_, *Global Monitoring status of action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outh Korea*, 2012
- Ekberg, Gunilla S. “Briefing - Swedish Law and Policies on Prostitution and USA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Human Beings”(2011), p 2,  
<http://www.sccjr.ac.uk/wp-content/uploads/2012/11/Briefing-Law-and-policies-on-prostitution-and-THB-Sweden-1203082.pdf>
- Enriques, Jean(진 앤리케즈 2012), 「지구화된 성매매 시장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여성과 인권』 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상반기)
- Heinrich, Kelly Hyland. “Ten Years After the Palermo Protocol: Where are Protections for Human Trafficking Victims?” *Human Rights Brief* 18, no.1 (2010)
- Home Affairs Committee *Second Report: Child sexual exploitation and the response to localised grooming*, (2013)
- International Labour Office, *The Sex Sector: The Economic and Social Bases of Prostitution in Southeast Asia*, (1998)

Claude, Kojas (2011), *Targeting the Sex Buyer (The Swedish Example: Stopping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where it all begins)*, Swedish Institute  
<http://lastradainternational.org/doc-center/2578/targeting-the-sex-buyer-the-swedish-example-stopping-prostitution-and-trafficking-where-it-all-begins>

Swedish Ministry of Gender Equality, *Legislation on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rchived 2010-03-06 at the Wayback Machine*, Government of Sweden, 4 February 2009

Swedish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Sweden (2010),  
“ACTION PLAN AGAINST PROSTITUTION AND HUMAN TRAFFICKING FOR SEXUAL PURPOSES”

Swedish Ministry of Justice, “Evaluation of the ban on purchase of sexual services”

Norma, Caroline (캐롤라인 노마, 2012), 「성매매 합법화가 인신매매에 미치는 영향: 호주사례를 중심으로」, 『여성과 인권』 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상반기)

Swedish Institute, “Selected extracts of the Swedish government report SOU 2010:49: -The Ban against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n evaluation 1999-2008”

[https://ec.europa.eu/anti-trafficking/sites/antitrafficking/files/the\\_ban\\_against\\_the\\_purchase\\_of\\_sexual\\_services\\_an\\_evaluation\\_1999-2008\\_1.pdf](https://ec.europa.eu/anti-trafficking/sites/antitrafficking/files/the_ban_against_the_purchase_of_sexual_services_an_evaluation_1999-2008_1.pdf)

Swedish Institute, “Selected extracts of the Swedish government report SOU 2010:49: - The Ban against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An evaluation 1999-2008”

Länsstyrelsen Stockholm (스웨덴 스톡홀름 행정위원회), *National Referral Mechanism*,  
<https://rm.coe.int/168070acc0>

United Nations, “Global treaties provide blueprint to ‘seal cracks’ in legal regime on human trafficking - UN anti-crime chief”, 『UN News Centre』 2016년 10월 27일 보도,

<http://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55417>

Waltman, Max (맥스 윌트먼, 2012), 「성구매 금지와 인신매매 척결: 스웨덴의 성매매 관련법」, 『여성과 인권』 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상반기)

Youth Justice Board for England and Wales (2013) *Youth Cautions: guidance for police and Youth Offending teams.*

#### <참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외교부, [www.mofa.go.kr](http://www.mofa.go.kr)

미합중국 국무부, <https://www.state.gov>

미국 의회, <http://www.congress.gov>

영국 검찰청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성매매와 성매매 착취 기소 안내 지침

Prosecution Policy and Guidance to Prostitution and Exploitation of Prostitution

[http://www.cps.gov.uk/legal/p\\_to\\_r/prostitution\\_and\\_exploitation\\_of\\_prostitution/#a18](http://www.cps.gov.uk/legal/p_to_r/prostitution_and_exploitation_of_prostitution/#a18)

영국 법령정보시스템, <http://www.legislation.gov.uk>

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https://ec.europa.eu/anti-trafficking/sites/antitrafficking/files/info\\_sheet\\_action\\_plan\\_against\\_prostitution\\_and\\_human\\_trafficking\\_for\\_sexual\\_purposes\\_en\\_1.pdf](https://ec.europa.eu/anti-trafficking/sites/antitrafficking/files/info_sheet_action_plan_against_prostitution_and_human_trafficking_for_sexual_purposes_en_1.pdf)

스웨덴 정부 The Government of Sweden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Swede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Ministry of Justice)

<http://www.government.se/articles/2011/03/legislation-on-the-purchase-of-sexual-services/>

스웨덴 스톡홀름 행정위원회 Länsstyrelsen Stockholm,

<http://www.lansstyrelsen.se/Stockholm/En/Pages/default.aspx>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캐나다 법령정보시스템, <http://laws.justice.gc.ca/eng/>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동향

<http://www.kwdi.re.kr/noticeList.kw?sgrp=S01&siteCmsCd=CM0001&topCmsCd=CM0003&cmsCd=CM0026&pnum=4&cnum=1>

ECPAT International 자료 <http://www.ecpat.org/resources/>

OHCHR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http://www.ohchr.org/EN>

UNODC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https://www.unodc.org/>

CRC(유엔 아동인권 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ohchr.org/EN/HRBodies/CRC/Pages/CRCIndex.aspx>

## <국제 협약>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 규제에 관한 선택의정서」

-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 의정서 (팔레르모 의정서)」
-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Palermo Protocol))
- 「유엔 국제범죄조직 방지협약」
- (United Nations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onvention (UNTOC))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 「1921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 「1948 세계 인권 선언」
-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1950 인신매매와 타인의 착취와 매춘 억제를 위한 유엔 협약」
- (1950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 「197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
- (1979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1989 유엔 아동인권 협약」
- (1989 Conventions on the Rights of the Child)
- 「2005년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협약」
-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Action against Trafficking in Human Beings)

<해외 법 온라인 출처>

네덜란드 형법 2012년 개정판 영어

<http://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

독일 형법 2013년 개정판 독일어/영어

<http://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

2008년 개정판, 한국어 번역 (법무부)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11  
&strWrtNo=589&strAnsNo=A&strRtnURL=MOJ\\_40600000&strOrgGbnCd=10  
0000](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11&strWrtNo=589&strAnsNo=A&strRtnURL=MOJ_40600000&strOrgGbnCd=10000)

미국 West's Annotated California Codes

영국 아동법(Children Act 1989) 2017 개정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contents>

영국 중범죄법 (Serious Crime Act 2003) 2015 개정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9/contents/enacted>

영국 현대노예법 (Modern Slavery Act 2015)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5/30/contents/enacted>

오스트리아 형법 2015개정판 독일어

<http://www.legislationline.org/documents/section/criminal-codes>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개정판, 한국어 번역 (법무부)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11  
&strWrtNo=589&strAnsNo=A&strRtnURL=MOJ\\_40600000&strOrgGbnCd=100  
000](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11&strWrtNo=589&strAnsNo=A&strRtnURL=MOJ_40600000&strOrgGbnCd=10000)

스웨덴 형법,

<http://www.government.se/articles/2011/03/legislation-on-the-purchase-of-sexual-services/>

캐나다 앨버타 주 「성매매 연루 아동 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Involved in Prostitution Act)」

<http://www.walnet.org/csis/reports/ab-prostitutionact.html>

캐나다 「성 착취 아동 보호법(The Protection of Sexually Exploited Children Act)」

<https://open.alberta.ca/dataset/fc15acf7-7531-45c0-8ffa-d3044e907df7/resource/f02df13b-3394-4371-a708-bd55aad98404/download/6045967-2010-Protection-of-Sexually-Exploited-Children-and-Youth.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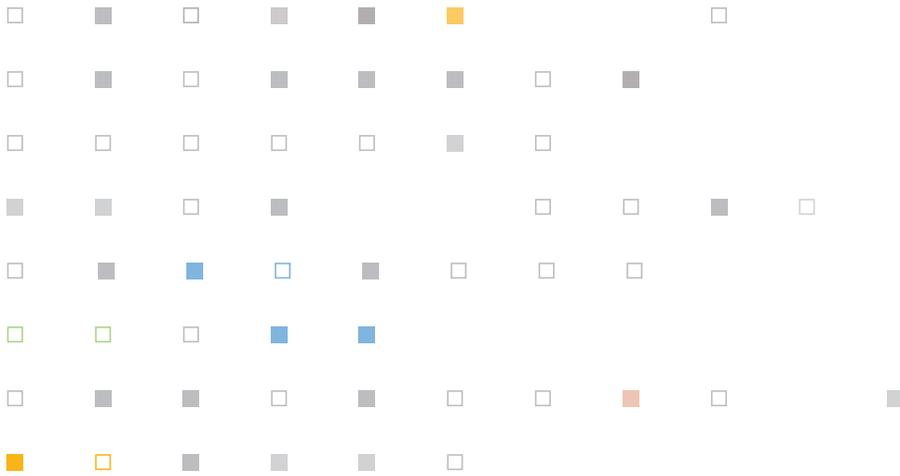
#### <해외 판례>

U.S. v. Seljan, 512F.3d 1203 (9th Cir. 2008) - 미국

Canada (AG) v. Bedford, 2013 SCC 72 - 캐나다







정책연구용역보고서

#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